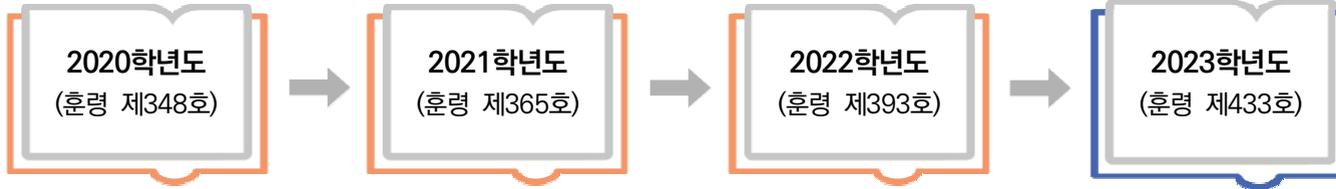


항목별 훈령 및 지침(기재요령) 주요 변경 사항 (최근 4년간)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유의 사항	전항목 공통 기재 금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추가(작성 시 유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 나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청소년단체 활동(3학년),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봉사활동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함. ☞ <u>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u> <u>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추가(작성 시 유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 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봉사활동 실적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함. ☞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수정 및 신설(작성 시 유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 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봉사활동 실적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함. ☞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기재불가 공인어학 시험】 <u>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 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u> - <u>대학교육협의회,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유의사항</u> -</p> <p>나. <u>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u> *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함. 다. <u>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 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u> 라. <u>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u> 마. <u>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u> 바. <u>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u> 사. <u>도서출간 사실</u> 아. <u>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u> 자. <u>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u> 차. <u>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u> 카. <u>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u></p>	<p>【기재불가 공인어학 시험】 <u>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u> -대학교육협의회,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유의사항 -</p> <p>나. <u>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u> *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함. 다. <u>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 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u> 라. <u>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u> 마. <u>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u> 바. <u>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u> 사. <u>도서출간 사실</u> 아. <u>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u> 자. <u>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u> 차. <u>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u> 카. <u>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u> 타. <u>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u></p>		<p>【기재불가 공인어학시험】 <u>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u></p> <p>나. <u>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u> *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함. 다. <u>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 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u> 라. <u>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u> 마. <u>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u> 바. <u>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u> 사. <u>도서출간 사실</u> 아. <u>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u> 자. <u>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u> 차. <u>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u> 카. <u>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u> 타. <u>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¹⁾(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²⁾ 등</u></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등</p> <p>【참고】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p>	<p>【참고】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p> <p>파. 교내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수상경력' 이외 항목 입력 불가 하.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 '자격증 및 인증취득사항' 이외 항목 입력 불가</p>		<p>1)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 기관의 경우,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 기관'으로 통칭하여 입력함. 2)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p> <p>파. 교내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수상경력' 이외 항목 입력 불가 하.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 '자격증 및 인증취득사항' 이외 항목 입력 불가</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고교 정보 관련 내용 기재 불가	■ 기재요령(신설) ※ <u>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20학년도부터 전 학년 대상 적용)</u>	■ 기재요령(추가) ※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u>학교명, 재단명, 학교 축제명, 학교 별칭 등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일체</u>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학교 생활부 기록부 관련 문의 방법	문의 시 유의사항 (해당 업무 담당 부서로 질의)		■ 기재요령(신설) [유의사항] • 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다양한 교육정책(학교폭력, 자유학기, 특수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지원)청 및 교육부의 해당 업무(학교폭력, 자유학기, 특수교육 등) 담당 부서로 질의함.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삭제(기재요령) [유의사항] • 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다양한 교육정책(학교폭력, 특수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지원)청 및 교육부의 해당 업무(학교폭력, 특수교육 등) 담당 부서로 질의함.																																																																					
처리 요령	항목별 입력 주체	□ 해설 ※ 입력주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항 목</th> <th>입력 주체</th> </tr> </thead> <tbody> <tr> <td>출결상황 특기사항</td> <td>학급담당교사</td> </tr> <tr> <td>진로희망사항</td> <td>학급담당교사</td> </tr> <tr> <td rowspan="3">창의적 체험활동 상황</td> <td>자율활동·진로활동</td> <td>학급담당교사</td> </tr> <tr> <td>봉사활동</td> <td>학급담당교사</td> </tr> <tr> <td>동아리활동</td> <td>지도교사</td> </tr> <tr> <td rowspan="2">교과학습 발달상황</td> <td>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d> <td>교과담당교사</td> </tr> <tr> <td>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d> <td>학급담당교사</td> </tr> <tr> <td>자유학기활동상황</td> <td>담당교사</td> </tr> <tr> <td>독서활동상황</td> <td>교과담당교사, 학급담당교사</td> </tr> <tr> <td>행동특성 및 종합의견</td> <td>학급담당교사</td> </tr> </tbody> </table>	항 목	입력 주체	출결상황 특기사항	학급담당교사	진로희망사항	학급담당교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자율활동·진로활동	학급담당교사	봉사활동	학급담당교사	동아리활동	지도교사	교과학습 발달상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담당교사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급담당교사	자유학기활동상황	담당교사	독서활동상황	교과담당교사, 학급담당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급담당교사	□ 해설 ※ 입력주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항 목</th> <th>입력 주체</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출결상황 특기사항</td> <td>학급 담당교사</td> </tr> <tr> <td rowspan="2">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영역별 특기사항</td> <td>자율활동·진로활동</td> <td>학급 담당교사</td> </tr> <tr> <td>동아리활동</td> <td>해당 동아리 담당교사</td> </tr> <tr> <td rowspan="2">교과학습 발달상황</td> <td>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d> <td>교과 담당교사</td> </tr> <tr> <td>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d> <td>학급 담당교사</td> </tr> <tr> <td colspan="2">독서활동상황</td> <td>교과 담당교사, 학급 담당교사</td> </tr> <tr> <td colspan="2">행동특성 및 종합의견</td> <td>학급 담당교사</td> </tr> </tbody> </table>	항 목		입력 주체	출결상황 특기사항		학급 담당교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자율활동·진로활동	학급 담당교사	동아리활동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	교과학습 발달상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 담당교사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급 담당교사	독서활동상황		교과 담당교사, 학급 담당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급 담당교사	□ 해설 ※ 입력주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항 목</th> <th>입력 주체</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출결상황 특기사항</td> <td>학급 담당교사</td> </tr> <tr> <td rowspan="3">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영역별 특기사항</td> <td>자율활동</td> <td>학급 담당교사</td> </tr> <tr> <td>진로활동</td> <td>학급 담당교사</td> </tr> <tr> <td>동아리활동</td> <td>해당 동아리 담당교사</td> </tr> <tr> <td rowspan="2">교과학습 발달상황</td> <td>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d> <td>교과 담당교사</td> </tr> <tr> <td>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d> <td>학급 담당교사</td> </tr> <tr> <td colspan="2">독서활동상황</td> <td>교과 담당교사, 학급 담당교사</td> </tr> <tr> <td colspan="2">행동특성 및 종합의견</td> <td>학급 담당교사</td> </tr> </tbody> </table>	항 목		입력 주체	출결상황 특기사항		학급 담당교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자율활동	학급 담당교사	진로활동	학급 담당교사	동아리활동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	교과학습 발달상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 담당교사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급 담당교사	독서활동상황		교과 담당교사, 학급 담당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급 담당교사
항 목	입력 주체																																																																									
출결상황 특기사항	학급담당교사																																																																									
진로희망사항	학급담당교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자율활동·진로활동	학급담당교사																																																																								
	봉사활동	학급담당교사																																																																								
	동아리활동	지도교사																																																																								
교과학습 발달상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담당교사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급담당교사																																																																								
자유학기활동상황	담당교사																																																																									
독서활동상황	교과담당교사, 학급담당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급담당교사																																																																									
항 목		입력 주체																																																																								
출결상황 특기사항		학급 담당교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자율활동·진로활동	학급 담당교사																																																																								
	동아리활동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																																																																								
교과학습 발달상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 담당교사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급 담당교사																																																																								
독서활동상황		교과 담당교사, 학급 담당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급 담당교사																																																																								
항 목		입력 주체																																																																								
출결상황 특기사항		학급 담당교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자율활동	학급 담당교사																																																																								
	진로활동	학급 담당교사																																																																								
	동아리활동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																																																																								
교과학습 발달상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 담당교사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급 담당교사																																																																								
독서활동상황		교과 담당교사, 학급 담당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급 담당교사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학생부 대필 금지	<p>■ 문구(항목) 신설(해설)</p> <p>☞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에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수행평가 결과물, ④ 소감문, ⑤ 독후감</p> </div> <p>- 사용자는 학생부 내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상기 ①~⑤의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됨.</p>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에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수업 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④ 소감문, ⑤ 독후감</p> </div> <p>- 사용자는 학생부 내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상기 ①~⑤의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됨.</p>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에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수업 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④ 소감문, ⑤ 독후감</p> </div> <p>- 사용자는 학생부 내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상기 ①~⑤의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됨.</p>	전년도와 동일	
	부정청탁 금지	<p>□ 해설</p> <p>☞ 라. 학생평가 및 평가결과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칙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 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2201, '18.11.19.).</p> <p>※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함.</p> <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추가(해설)</p> <p>☞ 학생평가 및 평가결과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칙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 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2201, '18.11.19.).</p> <p>※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함.</p> <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p> <p>-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 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p>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p> <p>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 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p>
	영문 입력의 부득이한 경우	<p>□ 해설</p> <p>☞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 - 외국 학교명 - 도서명과 저자명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외국학교명, 도서명과 저자명 등) 	<p>■ 문구(항목) 삭제(해설)</p> <p>☞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 	전년도와 동일
	학적 변동 학생의 각종 자료 처리 방법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학생이 전출·휴학·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p> <p>※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 사항(누가기록 포함), 자유학기활동상 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p>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학생이 전출·휴학·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p> <p>※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 사항(누가기록 포함),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p>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수상대상자의 전출 시 처리 방법	<input type="checkbox"/> 해설 [기재 방법] ☞ 교과우수상 대상자나 사정회 수상대상자가 시상일자 이전에 전출 간 경우 전입교에서 [학생생활]-[수상경력]-[학급별수상관리]에서 입력할 수 있으며, 수상연월일은 전출교에서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입력함.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해설) [기재 방법] ☞ <u>수상대상자가</u> 시상일자 이전에 전출 간 경우 전입교에서 [학생생활]-[수상경력]-[학급별수상관리]에서 입력할 수 있으며, 수상연월일은 전출교에서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입력함.
전출입 시 학교 폭력 관련 조치 사항 관리 방법	<input type="checkbox"/> 해설 ☞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입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에 추가 기록하여 비공개 문서로 관리한다.	■ 문구(항목) 추가(해설) ☞ <u>교육정보시스템 또는 공문을 통해 전송된 자료에</u>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입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에 추가 기록하여 비공개 문서로 관리한다. ☞ <u>전출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 대장'에 기록된 조치사항을 공문을 통해 전입교에 전송하고, 전입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추가 기록하여 비공개 문서로 관리한다.</u>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타교 편입학 시 자료 전송 방법	<input type="checkbox"/> 해설 ☞ 타교 재취학·편입학 시 자료 송부 방법은 위 '자' 항을 준용한다.	■ 문구(항목) 수정(해설) ☞ 타교 재취학·편입학 시 자료 송부 방법은 위 ' <u>차</u> ' 항을 준용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해설) ☞ <u>타교 편입학</u> 시 자료 송부 방법은 위 ' <u>차</u> ' 항을 준용한다.
학생부 자료 제공 범위	<input type="checkbox"/> 해설 ☞ 학기 중 학생/학부모 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 기록부 자료 제공 시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 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	■ 문구(항목) 추가(해설) ☞ <u>재학생(휴학) 및 학업중단 학생(자퇴·퇴학·제적)에 대해</u>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u>작성이 완료되지 않은(재학생: 당해 학년도(학년도</u>	■ 문구(항목) 삭제 및 신설(해설) ☞ 재학생(휴학) 및 학업중단 학생(자퇴·퇴학·제적)에 대해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u>작성이 완료되지 않은(재학생: 당해 학년도</u>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기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당해학년도에는 제공하지 않는다.</p> <p>※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 메뉴를 활용함. 단, 졸업예정자 중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전형자료용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부] 메뉴에서 출력함.</p>	<p>종료 전 휴학하는 경우 휴학 당시 학년도), 학업중단학생: 학업중단 발생 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는다.</p> <p>※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 메뉴의 ‘생활기록부(초, 중, 고)’를 활용함.</p> <p>※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전형자료용 학교생활기록부는 [민원] 메뉴의 ‘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를 이용하여 출력함.</p> <p>※ 당해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임.</p>	<p>(학년도 종료 전 휴학하는 경우 휴학 당시 학년도), 학업중단학생: 학업중단 발생 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는다.</p> <p>※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 메뉴의 ‘생활기록부(초, 중, 고)’를 활용함.</p> <p>※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전형자료용 학교생활기록부는 [민원] 메뉴의 ‘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를 이용하여 출력함.</p> <p>※ [민원]의 출력상세경로는 [민원]-[민원 접수처리관리]-[제증명민원접수]-[학생관련민원접수]의 [민원사무명]에서 ‘생활기록부(초, 중, 고)’와 ‘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임.</p> <p>※ 당해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임.</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개인정보 파기	<p>□ 해설</p> <p>☞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시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시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u>아니도록</u> 조치하여야 한다.</p>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시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u>아니하도록</u> 조치하여야 한다.</p>
	훈령 제243호 (2018.3.1.) 이전의 훈령이 적용된 학생의 복귀시 글자수 축소에 따른 조치사항		<p>■ 해설(신설)</p> <p>☞ 훈령 제243호(2018.3.1.) 이전 훈령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이 복학, 재입학, 편입학 등의 사유로 제280호(2019.3.1.) 이후 훈령의 적용을 받아 항목별 입력 가능한 글자 수가 축소되는 경우, <u>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된 글자수에 맞도록 수정하여 입력해야 한다.</u></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유의 사항	<p>■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p> <p>☞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입력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함</p> <p>※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용을 복사하여 입력한 경우 글자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록된 내용을 반드시 출력하여 확인함.</p> <p>- 서술형 항목 입력 시 특수문자, 문단구분 기호(번호) 입력은 지양함.</p> <p>- 특기사항 등에 입력하는 서술형 문장은 명사형 어미로 종결하며 문단(내용)단위로 줄 바꿈을 하여 입력할 수 있음</p>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입력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함</p> <p>※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용을 복사하여 입력한 경우 글자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록된 내용을 반드시 출력하여 확인함.</p> <p>- 서술형 항목 입력 시 특수문자, 문단구분 기호(번호) 입력은 지양함.</p> <p>- 특기사항 등에 입력하는 서술형 문장은 명사형 어미로 종결하며 문단(내용)단위로 줄 바꿈을 하여 입력할 수 있음</p>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 이전 학년도 자료의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함. ※ 전출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자료를 전송할 책임이 있음.		- 이전 학년도 자료의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함. ※ 전출교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의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자료를 전송할 책임이 있음.	
	유예의 개념 □ 훈령 별표7 ≡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의거 '정원의학적관리' 할 수 있음).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훈령 별표7) ≡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의학적관리' 할 수 있음).
	명예졸업의 개념 □ 훈령 별표7 ≡ 명예졸업: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비 또는 자비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면제 및 자퇴의 한 사유임).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 및 삭제(훈령 별표) ≡ 명예졸업: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명예졸업은 수료 및 졸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8조)이나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과 무관함.
	특수 교육 대상자의 학적 처리 □ 해설 ≡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입학, 휴학, 면제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한다.	■ 문구(항목) 수정 및 신설(해설) ≡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입학,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한다. ※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 교육대상자의 학적처리에 준하여 처리함(중학교 기재)	■ 문구(항목) 수정(해설) ≡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입학,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한다. ※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 교육대상자의 학적처리에 준하여 처리함(중학교 기재)	■ 문구(항목) 수정(해설) ≡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입학,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 교육대상자의 학적처리에 준하여 처리함(중학교 기재)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요령 '인적·학적사항' 참고 단,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예 및 면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관할 특수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요령 '인적·학적사항' 참고 단,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예 및 면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요령 '인적·학적사항' 참고 단,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예 및 면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학적 변동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수정(해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 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 학교폭력 관련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학적변동을 제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추가(해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 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확정 후 이행 완료 시까지 학적변동을 제한함. 단, 학교의 장이 관련 학생 간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가 미이행 되었더라도 내부결재를 거쳐 학적변동을 수반하는 전학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수정(해설)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때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학적변동을 제한함. 단, 학교의 장이 관련 학생 간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가 미이행 되었더라도 내부결재를 거쳐 학적변동을 수반하는 전학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전년도와 동일
인적·학적 사항	입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추가(별표7 해설) ☞ 입학 1)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도로 처음 학교에 들어옴. 2) 외국인 학생이 1학년도로 신입학하는 경우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입학으로 처리함.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수정(별표7 해설) ☞ 입학 1)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도로 처음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2) 외국인 학생이 1학년도로 신입학하는 경우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입학으로 처리한다.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명예졸업 해설 및 처리 절차	<p>□ 별표9 해설</p> <p>☞ 명예졸업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p> <p>※ 명예졸업 업무 처리 절차</p> <p>①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p> <p>②심의 절차: 심의 신청(해당 학생 학부모,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별표9 해설)</p> <p>☞ 명예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p> <p>※ 명예졸업 업무 처리 절차</p> <p>①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p> <p>②심의 절차: 심의 신청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p>
	학생 정보 (외국인의 이름 입력)	<p>■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p> <p>☞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입력한다.</p> <p>※ 증빙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p>	<p>■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p> <p>☞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그대로 입력한다.</p> <p>※ 증빙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학생주소 연계 메뉴경로 안내				<p>■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p> <p>☞ 교육정보시스템 [학적]-[기본학적관리]-[학생주소연계]를 통하여 학생의 주소를 입력할 수 있다.</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인적사항 변경 시 처리]</p> <p>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하여 정정한다.</p> <p>※ 학생의 개명으로 인한 성명 정정은 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을 근거로 함(졸업생 개명 포함).</p> <p>※ 2학년 학생정보 및 3학년과 졸업생의 인적사항의 정정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함.</p> <p>〈기재 경로〉</p> <p>▶ 개명 이외의 학생정보 수정: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p> <p>〈기재 경로〉</p> <p>▶ 재학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p> <p>▶ 졸업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 [졸업생자료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p> <p>▶ 보존시스템으로 자료가 이관된 졸업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보존]-[학생부보존(초/중/고/특)]-[학생부정정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p> <p>※ 주소 변경은 별도의 정정절차 없이 교육정보시스템의 누가주소등록 탭에서 처리함.</p> <p>- 비밀전학의 경우 학생의 피해가 발생</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p> <p>학생정보가 변경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하여 정정한다.</p> <p>※ 재학생 및 졸업생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을 근거로 함.</p> <p>※ 신입생은 학생정보 중 학생 본인의 개명 (표기방식 변경 포함)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함.</p> <p>〈기재 경로〉 이후 내용동일</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p> <p>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 처리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 처리한다. 다만, 신입생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 처리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주소는 별도 정정절차 없이 교육정보시스템의 {누가주소등록}탭에서 처리한다.</p> <p>※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함.</p> <p>※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p> <p>〈기재 경로〉</p> <p>▶ 신입생의 학생정보(성명 제외) 수정: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p> <p>▶ 재학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p> <p>▶ 학업중단학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이름으로조회}-{학생찾기}</p> <p>※ 신입생이 입학 학년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개명을 제외한 학생정보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학적반영 취소 후 수정</p> <p>▶ 졸업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졸업생자료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p> <p>▶ 보존시스템으로 자료가 이관된 졸업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보존]-[학생부보존(고)/학생부보존(특)]-[학생부정정관리]- [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p>	<p>전년도와 동일</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하지 않도록 전입교에서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기록하지 않음(「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p>		<p>※ 비밀전학의 경우 학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입교에서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기록하지 않음(「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p>	
학적 특기사항 입력 시 유의사항	<p>□ 기재요령</p> <p>☞ 자퇴·퇴학·휴학·재입학·편입학·복학·유급·조기진급 등 중요한 학적변동인 경우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p> <p>☞ 자퇴·퇴학·휴학·재입학·편입학·복학·유급·조기진급 등 중요한 학적변동인 경우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p> <p>※ 중요한 학적변동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국학생 등의 재입학, 편입학 시 해외 수학 기간 및 외국학교명은 ‘특기사항’에 기재하지 않음.</p>	
각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p>□ 기재요령</p> <p>☞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입학·재취학·편입학 등은 불가능함.</p> <p>☞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음.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함.</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입학·편입학 등은 불가능함.</p> <p>☞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음.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함.</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입학·편입학 등은 불가능함.</p> <p>☞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음.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함.</p>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전입 학생의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			■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 ☞ <u>전입학의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 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 학년을 수료할 수 있다.</u>	전년도와 동일
	전출·입 일자 기준일	■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 ☞ 전출일과 전입일은 연중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1일의 공백 인정과 국외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최대 3일의 공백 인정 추가 및 수업일수 제외) ☞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당일은 전입일로 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한다. ※ <u>신입생의 경우 입학일에 전출·전입이 발생 시 전출일과 전입일을 동일한 날자로 처리할 수 있음.</u>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전출일과 전입일은 연중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1일의 공백 인정과 국외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최대 3일의 공백 인정 추가 및 수업일수 제외) ☞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당일은 전입일로 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한다. ※ <u>신입생의 경우 입학일에 전출·전입이 발생 시 전출일과 전입일을 동일한 날자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재 경로 경로는 다음과 같다.</u>	전년도와 동일
	재입학· 편입학·복학 학생의 학교 생활 기록부 입력 방법 및 정정 증빙자료	□ 기재요령 ☞ 재취학·재입학·편입학·복학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취학·재입학·편입학·복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중단 시의 내용으로, 재취학·재입학·편입학·복학일 이후의 내용은 재취학·재입학·편입학·복학 후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한다.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u>재입학·편입학·복학</u> 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u>재입학·편입학·복학일</u> 이전의 내용은 학업중단 시의 내용으로, <u>재입학·편입학·복학일</u> 이후의 내용은 <u>재입학·편입학·복학</u> 후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한다.	■ 문구(항목) 추가 신설(기재요령) ☞ 재입학·편입학·복학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입학·편입학·복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중단 시의 내용으로, 재입학·편입학·복학일 이후의 내용은 재입학·편입학·복학 후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한다.	■ 문구(항목) 추가 및 수정(기재요령) ☞ <u>유급·재입학·편입학·복학</u> 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입학·편입학·복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중단 시의 내용으로 <u>입력하고, 유급·재입학·편입학·복학</u> 일 이후의 내용은 <u>유급·재입학·편입학·복학</u> 후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한다.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 재입학·편입학·복학 등에 따라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 유급·재입학·편입학·복학 등에 따라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귀국학생 등의 외국 학교 수학 사실 입력 등	<p>□ 기재요령</p> <p>☞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 다만,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외국학교명과 수학기간은 입력할 수 있다.</p> <p>☞ 외국인인 학생과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 다만,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외국학교의 학교급과 수학기간은 입력할 수 있다.</p> <p>☞ 외국인인 학생과 인정 유학으로 자퇴 후 국내학교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p>	<p>■ 문구(항목) 삭제(기재요령)</p> <p>☞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p> <p>☞ 외국인인 학생과 인정 유학으로 자퇴 후 국내학교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p>	전년도와 동일
	귀국학생 등의 제출 서류	<p>□ 기재요령</p> <p>☞ 6) 귀국학생 등이 입학·편입학 시, 해당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와 학년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p> <p>가) 제출 서류</p> <p>(1)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p> <p>(2) 성적증명서</p> <p>(3)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6) 귀국학생 등이 입학·편입학 시, 해당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와 학년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p> <p>가) 제출 서류</p> <p>(1)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p> <p>(2) 성적증명서</p> <p>(3)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관리' 참고 (7) 기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 (반드시 관할교육청의 서류 확인 필요)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5)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관리' 참고 (7) 기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 (반드시 관할교육청의 서류 확인 필요)
한국 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이전학년도 자료 입력	<input type="checkbox"/> 기재요령 ≡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 학교와의 전출·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input type="checkbox"/> 기재요령 ≡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 학교와의 전출·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 <u>국내학교(A) 전출 → 한국학교(B) 전입·전출 → 국내학교(C) 전입 시 국내 학교(A) 또는 한국학교(B)로부터 이전학년도 자료를 받아 입력함.</u>	<input type="checkbox"/> 기재요령 ≡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 학교와의 전출·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 <u>국내학교(A) 전출 → 한국학교(B) 전입·전출 → 국내학교(C) 전입 시 국내 학교(A) 또는 한국학교(B)로부터 이전학년도 자료를 받아 입력함.</u>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학력 인정 외국 교육 기관·외국인학교 학적 처리 방법	<input type="checkbox"/> 기재요령 ≡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전출·입 처리 방법 1) 국내학교에서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외국인학교로 전출하거나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input type="checkbox"/> 기재요령 ≡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전출·입 처리 방법 1) 국내학교에서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외국인학교로 전출하거나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며,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학년배정은 '마'항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input type="checkbox"/> 기재요령 ≡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학적 처리 방법 1) 국내학교에서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외국인학교로 전출하거나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며,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학년배정은 '바'항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소년보호기관 입교 시 처리 방법 및 소년원 교육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령	<p>□ 기재요령</p> <p>☞ 재학생이 소년보호기관(교과교육을 운영하는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입교한 경우, 원적교에서는 [참고자료 6]을 참조하여 위탁학생 등으로 처리한다.</p> <p>- 소년원 교육의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영역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p> <p>·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 계획」(고용노동부)</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재학생이 소년보호기관(교과교육을 운영하는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분류심사원)에 입교한 경우, 재적교에서는 [참고자료 6]을 참조하여 처리한다.</p> <p>- 소년원 교육의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영역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p> <p>·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 계획」(고용노동부)</p>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 학생의 비밀처리 방법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 학생의 취학 지원 및 비밀처리 방법</p> <p>1)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입학 및 편입학 포함)할 경우, 아동학대·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취학을 지원하되, 아동학대 행위자, 가정폭력 가해자(친권자 포함)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p> <p>※ 전입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비밀전입 여부에 체크처리를 하여 전송되는 학생 자료 중 학부모서비스 신청정보를 제외함.</p> <p>2)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동일 지역 내 포함) 아동학대·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다.</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 학생의 취학 지원 및 비밀처리 방법</p> <p>1)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입학 및 편입학 포함)할 경우, 아동학대·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취학을 지원하되, 아동학대 행위자, 가정폭력 가해자(친권자 포함)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p> <p>※ 전입 처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비밀전입여부에 체크처리를 하여 전송되는 학생자료 중 학부모서비스 신청정보를 제외함.</p> <p>2)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동일 지역 내 포함) 아동학대·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다.</p>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아동학대·가정폭력 관련 법에 따른 피해 학생의 취학지원 및 비밀처리 방법</p> <p>1) 피해 학생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입학 및 편입학 포함)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가해자(친권자 포함)에게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p> <p>※ 전입 처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비밀전입여부에 체크처리를 하여 전송되는 학생자료 중 학부모서비스 신청정보를 제외함.</p> <p>2) 피해 학생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동일 지역 내 포함) 아동학대·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다.</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아동학대·가정폭력 발생 사실 입증의 객관적 자료	<input type="checkbox"/> 기재요령 ※ 객관적인 자료: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해설) ※ 객관적인 자료: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지방자치단체 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해설) ※ 객관적인 자료의 예시: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지방자치단체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학대 피해아동 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실 확인서 등																																			
	출석 일수 부족에 따른 재입학·전입학·복학 불가능경우	<input type="checkbox"/> 훈령 별표8 ※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일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0조제2항 참조).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훈령 별표8) ※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일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0조제2항 참조).	전년도와 동일																																			
출결 상황	경조사 일수	<input type="checkbox"/> 훈령 별표8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 분</th> <th>대 상</th> <th>일 수</th> </tr> </thead> <tbody> <tr> <td>결 혼</td> <td>◦ 형제, 자매, 부, 모</td> <td>1</td> </tr> <tr> <td>입 양</td> <td>◦ 학생 본인</td> <td>20</td> </tr> <tr> <td rowspan="4">사 망</td> <td>◦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td> <td>5</td> </tr> <tr> <td>◦ 증조부모, 외증조부모</td> <td>3</td> </tr> <tr> <td>◦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td> <td>3</td> </tr> <tr> <td>◦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td> <td>1</td> </tr> </tbody> </table>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문구(항목) 수정 및 삭제(훈령 별표8)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 분</th> <th>대 상</th> <th>일 수</th> </tr> </thead> <tbody> <tr> <td>결 혼</td> <td>◦ 형제, 자매, 부, 모</td> <td>1</td> </tr> <tr> <td>입 양</td> <td>◦ 학생 본인</td> <td>20</td> </tr> <tr> <td rowspan="4">사 망</td> <td>◦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td> <td>5</td> </tr> <tr> <td>◦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td> <td>3</td> </tr> <tr> <td>◦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td> <td>3</td> </tr> <tr> <td>◦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td> <td>1</td> </tr> </tbody> </table>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출석 인정 결석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신설(훈령 별표8) ☞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수정 및 신설(훈령 별표8) ☞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신설(훈령 별표8) ☞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11)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건강장애 학생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령 별표8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수정(훈령 별표8)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전년도와 동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신설(훈령 별표8) ☞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5)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신설(훈령 별표8) ☞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미인정 결석 유형		■ 문구(항목) 신설(훈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기타 결석 유형				■ 문구(항목) 신설(훈령) ※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가)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나)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 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 수강학생 처리	■ 문구(항목) 신설(훈령) ※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제4항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및 평가.	■ 문구(항목) 수정(훈령) ※ 소속 학교에 실시한 원격 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원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u>학교생활기록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 <u>작성</u>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 학생 처리</p>	<p>■ 문구(항목) 신설(훈령)</p> <p>✓ <u>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 학생 처리</u></p> <p>☞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 활용 수업)</p> <p>•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출결·성적을 처리한다.</p> <p>• 출결처리</p> <p>-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p> <p>-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p> <p>• 성적처리</p> <p>- 성적처리는 별표 9 및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p> <p>- 시·도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 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p> <p>☞ <u>병원학교·원격수업 등(건강장애 학생)</u></p>	<p>■ 문구(항목) 수정(훈령)</p> <p>✓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 학생 처리</p> <p>☞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원격수업 등 <u>방송·정보통신매체</u> 활용 수업)</p> <p>- 이하 내용 동일 -</p>	<p>■ 문구(항목) 수정(훈령)</p> <p>✓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 학생 처리</p> <p>☞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원격수업 등 <u>방송·정보통신매체</u> 활용 수업)</p> <p>- 이하 내용 동일 -</p>	<p>전년도와 동일</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학적처리: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학적을 둔다.</u> • <u>출결처리</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소속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 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 <u>성적처리</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한다. -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u>보호소년 등 위탁교육기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적처리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학적 처리하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 제85조를 참조해 학적, 출석일수 등을 관리한다. • 성적처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별표 9의 '4조의 다목(5)', '4조의 라목(6)의 (마)', '6조의 다목'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 <u>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초·</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보호소년 등 위탁교육기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적처리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학적 처리하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 <u>제65조</u>, 제85조를 참조해 학적, 출석일수 등을 관리한다. - 이하 내용 동일 -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관련 교육규칙에 따라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p> <p>•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p>			
결과의 정의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마. '결과'는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학교장이 정한 시간 이후에 수업에 참여한 경우,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등을 말한다.</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재입학·전입학·복학생의 출석 일수 부족에 따른 유의점	<p>□ 해설(별표 8)</p> <p>☞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에 따라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취학·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p> <p>☞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재취학·재입학·전입학·복학을 요구할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재취학·재입학·전입학·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p>	<p>■ 문구(항목) 수정(해설 별표 8)</p> <p>☞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에 따라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p> <p>☞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재입학·전입학·복학을 요구할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재입학·전입학·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p>	<p>■ 문구(항목) 수정(해설 별표 8)</p> <p>☞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에 따라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p> <p>☞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재입학·전입학·복학을 요구할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재입학·전입학·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p>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상위 법령에 따른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해설(별표 8) ☞ 별표 8 2조 나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상위 법령에 따라 출석 인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출석인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별표 8 2조 나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상위 법령에 따라 출석 인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출석인정 결석 으로 처리할 수 있다.
현역병 지원 입대에 대한 출결처리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 현역병 지원입대는 학생이 졸업 전에 입대하지 않도록 지도하되, 지원입대를 한 경우는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휴학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를 충족한 경우, '기타 결석'으로 처리 가능 ※ '지원입대'의 경우 신체검사 참여는 ' 기타결석 '으로 처리함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위탁학생 제외)'는 부사관 입교를 ' 현장실습 ' 이수로 처리함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 현역병 지원입대는 학생이 졸업 전에 입대하지 않도록 지도하되, 지원입대를 한 경우는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휴학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를 충족한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가능 ※ '지원입대'의 경우 신체검사 참여 등은 ' 기타결석 '으로 처리함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위탁학생 제외)'는 부사관 입교를 ' 현장실습 ' 이수로 처리함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 현역병 지원입대는 학생이 졸업 전에 입대하지 않도록 지도하되, 지원입대 를 한 경우는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휴학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를 충족한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가능 ※ '지원입대'의 경우 신체검사 참여 등은 ' 기타결석 '으로 처리함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위탁학생 제외)'는 부사관 입교를 ' 현장실습 ' 이수로 처리함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 현역병 지원입대는 학생이 졸업 전에 입대하지 않도록 지도하되, 지원입대를 한 경우는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휴학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를 충족한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가능 ※ '지원입대'의 경우 신체검사 참여 등은 ' 기타결석 '으로 처리함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위탁학생 제외)'는 부사관 입교를 ' 현장실습 ' 이수로 처리함	
법원 소년부의 조사·심리 기간과 소년분류 심사원 재소 기간에 대한 처리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 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소년법」 제12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임무) 제2항제3호, 제31조(학적 관리)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상담조사 등) 제2항).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 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재적학교에서 ' 출석인정 '으로 처리한다(「소년법」 제13조, 제18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학적 관리)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상담조사 등) 제2항,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제1항).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 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 결석 으로 처리한다(「소년법」 제13조, 제18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학적 관리)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상담조사 등) 제2항,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제1항).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국제 경기대회와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자격의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p>□ 해설(별표 8)</p> <p>☞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와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 경우,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석으로 처리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한다.</p> <p>※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수업 결손에 따른 출결처리 및 성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p> <p>※ 학생선수라 함은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를 말함.</p>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p> <p>☞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와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 경우,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석인정’으로 처리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한다.</p> <p>※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수업 결손에 따른 출결처리 및 성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p> <p>※ 학생선수라 함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를 말함.</p>	<p>■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p> <p>☞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와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 경우,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한다.</p>
	교외 체험 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 학습’ 포함	<p>■ 문구(항목) 신설(별표 8 해설)</p> <p>☞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p> <p>-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p> <p>※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p> <p>○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보호 관찰소에서 명한 사회 봉사 및 특별교육	<p>■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p> <p>☞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기간, 대안교육 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제2항제1호부터</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p> <p>☞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기간, 대안교육 기간은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으로 처리한다(「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제2항제1</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등의 수강 기간, 대안교육 기간에 대한 처리	제2호,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1항, 제3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 인정)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제2호).		호부터 제2호,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1항, 제3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제2호).	제1호부터 제2호,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1항, 제3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제2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4호, 제5호)의 이수 시 출석 인정 결석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신설(별표 8 해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인한 결석으로 인정한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처리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설(별표 8)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u>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처리 불가)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u>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u>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u>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하며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생리결에 대한 출결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추가(별표 8 해설) ☞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2조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시간, 조퇴, 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별표 8 '2조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별표 8 '2조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별표 8 '2조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p> <p>※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p> <p>※ 출석인정 시 성적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p>	<p>※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p> <p>※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p> <p>※ 출석 인정 시 성적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p>	<p>※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p> <p>※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p> <p>※ 출석 인정 시 성적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p>	<p>※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p> <p>※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p> <p>※ 출석 인정 시 성적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p>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에 출석 시 출결처리			<p>■ 문구(항목) 신설(별표 8 해설)</p> <p>☞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피·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 절차 등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전년도와 동일</p>	<p>■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p> <p>☞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피·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 절차 등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p>
투표 참여 경우의 출석 인정 범위				<p>■ 문구(항목) 신설(별표 8 해설)</p> <p>☞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 인정 범위는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으로 하며, '직접 필요한 시간'에는 투표에 소요된 시간에 당일 왕복 소요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p>	<p>■ 문구(항목) 추가(별표 8 해설)</p> <p>☞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 인정 범위는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으로 하며, '직접 필요한 시간'에는 투표에 소요된 시간에 당일 왕복 소요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p> <p>※ 사전투표의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하교 후, 주말 등)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이로 인한 결석(지각, 조퇴 등 포함)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정치활동 참여 관련 출결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신설(별표 8 해설) ☞ 공직에 선출된 자가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후보등록자 본인의 선거운동, 정당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의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 한해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특기사항’란에 ‘교외활동(0일)’로 사유를 입력한다. 단, 정치활동 참여 관련 사항은 출결특기사항 외 학교생활기록부 어디에도 기재하지 않는다.
	결석계 제출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신설(별표 8 해설) ☞ 별표 8 ‘2조 다목’의 결석계를 제출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결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기한(5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를 의미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재판 결과 최종 무죄판결시 출결 및 성적 처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설(별표 8) ☞ 별표 8 ‘2조 라목’ 4)의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란 범법행위의 피의자로 수사기관(경찰, 검사)의 수사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추가(별표 8 해설) ☞ 별표 8 ‘2조 라목’ 5)의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란 범법행위의 피의자로 수사기관(경찰, 검사)의 수사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한다. ※ 단, 재판 결과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경우 제외)에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변경하여 입력함.(지필평가 기간 제외, 성적은 미변경)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결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설(별표 8)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 학생의 출결 등 처리</p>	<p>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p>		<p>■ 문구(항목) 신설(별표 8 해설)</p> <p>☞ 라.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 학생의 출결 등 처리</p> <p>1) 학년 초(또는 학기 초) 교과별(학년별) 협의회 등에서 원격수업의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원격수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p> <p>*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과 통합 운영 가능</p> <p>※ 학년 초(또는 학기 초) 계획 수립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학기 중 계획 수립 가능</p> <p>2) 출결 처리: 출결 확인은 원격수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교과담당교사가 당일 매 교시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매 교시별 출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콘텐츠 활용과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의 출결은 3일 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 최종 확인하여 기록할 수 있다. 다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하여 기록할 수 있다. 출결 마감은 학급 담임교사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월 단위로 할 수 있다.</p> <p>※ 학교장이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출결(마감) 처리 시기 등 세부적인 사</p>	<p>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u>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u></p> <p>전년도와 동일</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 기관 등에서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p>□ 해설(별표 8)</p> <p>☞ 위탁교육이라 함은 법원 또는 교육감의 명에 의해 소년 관련 시설, 대안교육 기관(다문화학생위탁형 예비학교 포함), 수업을 정보통신매체로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받은 교육을 말한다.</p>	<p>■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p> <p>☞ 위탁교육이라 함은 법원 또는 교육감의 명에 의해 소년 관련 시설, 대안교육 기관(다문화학생 위탁형 예비학교 포함), 수업을 방송·정보통신매체로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받은 교육을 말한다.</p>	<p>■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p> <p>☞ 위탁교육이라 함은 법원 또는 교육감의 명에 의해 소년 관련 시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다문화학생 위탁형 한국 어학급 포함), 수업을 방송·정보통신매체로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받은 교육을 말한다.</p>	전년도와 동일
	기타 결석 특기 사항 기재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2)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장기 결석의 범위 및 개인 정보 보호가 필요한 질병 결석 사유 처리 방법	<p>■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p> <p>※ '장기결석'은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학교장이 정함. ※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p>	<p>■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p> <p>※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학생선수 출결처리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을 허가할 경우에는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0일, 고등학교 40일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국가대표는 대한체육</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출석 인정을 허가할 경우에는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국가대표는 대한</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함(「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함(「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을 근거로 허용 일수를 초과해 허용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장)이 인정하는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0일, 고등학교 4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는 훈련 장소 인근학교에 위탁 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한다.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 생활 참여를 위해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0일, 고등학교 40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p>※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0일, 고등학교 40일) 적용 방법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함.</p>	<p>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을 근거로 허용 일수를 초과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장)이 인정하는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와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는 훈련 장소 인근학교에 위탁 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한다.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 생활 참여를 위해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 범위 내에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p>※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 적용 방법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함.</p>	<p>☞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p> <p>☞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명시)을 근거로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일수를 초과할 수 있다.</p> <p>※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는 훈련 장소 인근학교에 위탁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함.</p>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0일) 적용 방법은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함. 	<p>☞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범위 내에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과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p> <p>☞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p> <p>**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명단 명시)을 근거로 하며 꿈나무, 청소년대표, 후보자 훈련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실시하는 훈련이 아니므로, 출석인정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p> <p>☞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시 교외체협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p> <p>※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한 경우에는 훈련 장소 인근학교에 위탁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함.</p> <p>☞ 학생선수 출결처리에 따른 적용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단위로 대회 또는 훈련 참가의 경우: 1일 단위로 누적하여 관리 <p>〈예시〉 학생선수가 4일 동안 대회에 참</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가한 경우 허용일수(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에서 4일 제외함.</p> <p>-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6시간(수업시간) 누적 시 1일로 간주</p> <p>〈예시〉 학생선수가 조퇴 4시간, 결과 4시간, 지각 4시간을 한 경우 합산이 12시간이 되므로 2일로 간주하여 허용일수에서 2일 제외함.</p> <p>-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적용 방법은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함.</p>
	<p>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출결처리 방법</p>	<p>□ 기재요령</p> <p>1)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2018. 04.06.부터 적용).</p> <p>가)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p> <p>나)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p>	<p>전년도와 동일</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1)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2018.04.06.부터 적용).</p> <p>가)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p> <p>나) 등교시간대 거주지나 학교 주변에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p>	<p>전년도와 동일</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 대기정보(앱)를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p> <p>※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p>		<p>※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p> <p>※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p>	
	위탁 학생의 수업일수 처리 방법	<p>□ 기재요령</p> <p>☞ 소년보호기관별 출석일수 인정 여부 처리는 [참고자료 6] ‘소년보호기관 관련 처리’를 참조한다.</p> <p>☞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과 소년원 송치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p> <p>☞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 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대안교육과정(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위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p>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소년보호기관별 수업일수 인정 여부 처리는 [참고자료 6] ‘소년보호기관 관련 처리’를 참조한다.</p> <p>☞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과 소년원 송치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기간은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p> <p>☞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 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대안교육과정(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위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p>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기관 위탁학생 관리	<p>□ 기재요령</p> <p>☞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가정폭력 또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 기간에 대해 위탁학생으로 관리한다.</p>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추가 신설(기재요령)</p> <p>☞ 「아동복지법」 및 「<u>아동학대처벌법</u>」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u>분리보호된</u>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 학생으로 관리한다.</p> <p>※ 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등에 따라, 학적변동 없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음 (‘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교육부 교육복지 정책과-4140(‘21.10.29.)’) 참조</p>	전년도와 동일
	위탁학생 처리방법	<p>□ 기재요령</p> <p>☞ 소년보호기관, 대안교육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업과정학생, 건강장애 학생, 정보통신매체 등의 학적관리 및 출석일수, 교과 성적, 비교과 영역의 인정 여부는 표와 같다.</p> <p>〈기재 경로〉</p> <p>▶ 위탁학생 등록 시 ‘교육구분’ 설정에서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직업과정학생은 ‘직업과정위탁교육’으로, 건강장애학생은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나머지는 ‘기타’로 등록함.</p> <p>※ 항목별 자세한 처리 방법은 [참고자료]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를</p>	<p>■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p> <p>☞ 소년보호기관, 대안교육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업과정학생, 건강장애 학생, <u>방송·정보통신매체</u> 등의 학적관리 및 출석일수, 교과 성적, 비교과 영역의 인정 여부는 표와 같다.</p> <p>〈기재 경로〉</p> <p>▶ 위탁학생 등록 시 ‘교육구분’ 설정에서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직업과정학생은 ‘직업과정위탁교육’으로, 건강장애학생은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u>방송·정보통신매체는 ‘원격수업’으로, 공동교육과정은 ‘학교간공동교육과정’으로, 나머지는 ‘기타’로 등록함.</u></p> <p>※ 항목별 자세한 처리 방법은 [참고자료</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소년보호기관, 대안교육 <u>위탁교육기관</u>, 지방자치단체, 직업위탁기관, <u>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u>, 방송·정보통신매체, <u>국내교환학습, 공동교육과정</u> 등의 학적관리 및 수업일수, 교과 성적, 비교과 영역의 인정 여부는 표와 같다.</p> <p>〈기재 경로〉</p> <p>▶ 위탁학생 등록 시 ‘교육구분’ 설정에서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직업과정학생은 ‘직업과정위탁교육’으로, <u>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은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방송·정보통신매체는 ‘원격수업’으로, 공동교육과정은 ‘학교간 공동교육과정’으로, 나머지는 ‘기타’로 등</u></p>	<p>■ 문구(항목) 삭제 및 추가(기재요령)</p> <p>☞ 소년보호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업위탁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 방송·정보통신매체, 국내교환학습, 공동교육과정 등의 학적관리 및 수업일수, 교과 성적, 비교과 영역의 인정 여부는 표와 같다.</p> <p>〈기재 경로〉</p> <p>▶ 위탁학생 등록 시 ‘교육구분’ 설정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직업위탁기관은 ‘직업과정위탁교육’으로,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은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방송·정보통신매체는 ‘원격수업’으로, <u>학교밖교육은 ‘학교밖교육’으로, 나머지는 ‘기타’로</u></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참조함.	<p>기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를 참조함.</p> <p>※ 위탁학생은 학기 단위로 등록함.</p> <p>※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p>	<p>등록함.</p> <p>※ 항목별 자세한 처리 방법은 [참고자료]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를 참조함.</p> <p>※ 위탁학생은 학기 단위로 등록함.</p> <p>※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p>	<p>등록함.</p> <p>※ 항목별 자세한 처리 방법은 [참고자료]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를 참조함.</p> <p>※ 위탁학생은 학기 단위로 등록함.</p> <p>※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p>
수상 경력	교내상 입력	<p>■ 문구(항목) 추가(해설)</p> <p>☞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p> <p>※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 금지</p> <p>※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경력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 금지</p>	<p>■ 문구(항목) 삭제(해설)</p> <p>☞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p> <p>※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 금지</p> <p>※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경력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 금지</p>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p> <p>※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수상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 금지</p> <p>※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경력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 금지</p>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수상명에 고교 정보 관련 내용 기재 금지		<p>■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p> <p>☞ ※ 단, 수상명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수상 경력 의 참가 대상과 참가 인원 입력 방법	<p>□ 기재요령</p> <p>나. 참가대상과 참가인원은 실질적인 대회에 참가한 대상과 참가인원으로 하되, 대회의 실시결과 등을 근거로 입력한다.</p> <p>1) 참가인원의 입력 기준은 대회인 경우 대회 참가인원 기준으로, 포상대상자로 추천인 경우 추천인원 기준으로 입력함</p>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나. 참가대상과 참가인원은 실제 대회에 참가한 대상과 인원으로 하고, 대회의 실시결과 등을 근거로 입력한다.</p> <p>1) 참가인원의 입력 기준은 대회인 경우 대회참가인원 기준으로, 포상대상자로 추천인 경우 추천대상인원 기준으로 적용함.</p>	전년도와 동일
	시상계획 변경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2)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의 실시계획(수상비율, 시행월, 담당부서, 공개방식 등)을 기재한다.</p> <p>※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교내상의 경우에 한하여 수상경력에 입력할 수 있음. 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학기 초(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연간시상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장의 결재 후, 변경계획을 공개한 경우의 수상실적 내용만 입력할 수 있음.</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2)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의 실시계획(시행학기, 수상비율, 담당부서, 공개방식 등)을 기재한다.</p> <p>※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교내상의 경우에 한하여 수상경력에 입력할 수 있음. 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학기 초(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2학기 시상계획을 변경(수정·삭제·추가)하여 학교장의 결재 후, 변경계획을 공개한 경우의 수상실적 내용만 입력할 수 있음.</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입력 불가의 수상실적 범위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4) 다음의 경우에는 시상은 할 수 있으나 수상경력에는 하나의 수상실적 내용만 기재할 수 있다.</p> <p>가) 동일한 수상명으로 월별·격월·분기별</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로 수상한 경우</p> <p>나) 동일학기 또는 동일학년 기간 동안 하나의 교과성취도를 기준으로 복수의 상을 수상한 경우</p>			
수상경력에 입력 불가 항목	<p><input type="checkbox"/> 기재요령</p> <p>☞ 학년·학급 단위의 단체수상(체육대회 응원상, 환경미화상, 합창대회 등)이나 임명장·인증서는 입력하지 않는다.</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학년·학급 단위의 단체수상(체육대회 응원상, 환경미화상, 합창대회 등)이나 당선증·임명장·인증서는 입력하지 않는다.</p>	
유의 사항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포함) 및 야간자율학습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상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교육계획서 내 시상 계획이 있는 대회와 행사는 '수상경력' 이외의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 학교교육계획서 내 시상 계획이 있는 대회명과 행사명은 '수상경력'란에만 입력하고, 이와 관련한 활동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시상 계획이 없는 대회라도 '대회' 명칭은 입력할 수 없음). 2020학년도 1~2학년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학생별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제공함.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금지하는 실적을 근거로 한 수상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자율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교내상을 시상한 경우 기재하지 않음. ◦ 학교교육계획서 내 시상 계획이 있는 대회와 행사는 '수상경력' 이외의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 ◦ 학교교육계획서 내 시상 계획이 있는 대회명과 행사명은 '수상경력'란에만 입력하고, 이와 관련한 활동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시상 계획이 없는 대회라도 '대회' 명칭은 입력할 수 없음). ◦ 2021학년도 2~3학년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학생별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제공함.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제공하지 않음. 	<p>■ 유사 항목 중복 삭제(기재요령)</p> <p>☞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금지하는 실적을 근거로 한 수상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자율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교내상을 시상한 경우 기재하지 않음. ◦ 학교교육계획서 내 시상 계획이 있는 대회명과 행사명은 '수상경력'란에만 입력하고, 이와 관련한 활동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시상 계획이 없는 대회라도 '대회' 명칭은 입력할 수 없음). ◦ 2022학년도 3학년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학생별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제공함.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제공하지 않음. 	<p>■ 문구(항목) 삭제(기재요령)</p> <p>☞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금지하는 실적을 근거로 한 수상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자율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교내상을 시상한 경우 기재하지 않음. ◦ 학교교육계획서 내 시상 계획이 있는 대회명과 행사명은 '수상경력'란에만 입력하고, 이와 관련한 활동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시상 계획이 없는 대회라도 '대회' 명칭은 입력할 수 없음).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제공하지 않음.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 황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수상황의 비고란 입력	<p>□ 기재요령</p> <p>☞ 가. 정규교육과정에서 이수한 능력단위는 해당 기초과목 및 실무과목명을 입력한다.</p> <p>※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됨.</p>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가. 정규교육과정에서 이수한 능력단위는 해당 기초과목 및 실무과목명을 입력한다.</p> <p>※ <u>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장 승인과정 포함</u></p> <p>※ <u><비고>란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됨.</u></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가. <u>학교교육계획에 따라</u> 이수한 능력단위는 해당 기초 과목 및 실무 과목명을 입력한다.</p> <p>※ <u>능력단위 코드 및 <비고>란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됨.</u></p>
	유의 사항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 초·중학교는 2010학년도, 고등학교는 2011학년도 이후 교내·외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p> <p>◦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며,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침([참고자료2] 참조).</p> <p>◦ 고등학교의 경우, 자격증의 명칭 및 취득 사실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만 입력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p> <p>◦ <u>2020학년도 1~2학년의 경우</u>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음</p>	<p>■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p> <p>☞ ◦ 2011학년도 이후 교내·외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p> <p>◦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며,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침([참고자료2] 참조).</p> <p>◦ 자격증의 명칭 및 취득 사실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만 입력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p> <p>◦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음.</p> <p>◦ <u>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은 누가하여 기록함(이전학년도 취득한 자격증도 학생부 정정 불필요).</u></p>	<p>■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p> <p>☞ ◦ 2011학년도 이후 교내·외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p> <p>◦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며,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과정을 거침([참고자료2] 참조).</p> <p>◦ 자격증의 명칭 및 취득 사실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만 입력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p> <p>◦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음. <u>(단, 국가직무능력 표준이수상황은 제공)</u></p> <p>◦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은 누가하여 기록함(이전학년도 취득한 자격증도 학생부 정정 불필요).</p>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청소년단체 입력 범위	<input type="checkbox"/> 훈령 [1, 2학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 중 정규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3학년] 제1항의 동아리활동 중 청소년단체활동의 실적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 단체활동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 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 구분하여 '동아리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문구(항목) 수정(훈령) [1학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단체 활동은 <u>고등학교의 경우 단체명 및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는다.</u> [2, 3학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 중 정규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훈령 [1, 2학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단체 활동은 고등학교의 경우 단체명 및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는다. [3학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 중 정규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훈령 [1, 2, 3학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 단체 활동은 고등학교의 경우 단체명 및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는다.
	표준 가이드라인	<input type="checkbox"/>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 [1, 2학년]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함.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중 소논문 실적(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 시간)은 기재할 수 없음. * 자율탐구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임. ※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문구(항목) 수정/추가(기재요령) [1, 2, 3학년]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함. •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u>학생의 특기사항**만을</u> 기재할 수 있음. *자율탐구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임. ** 예)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능력 탁월,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회문제 연결 노력 등	<input type="checkbox"/>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함. •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u>학생의 특기사항**만을</u> 기재할 수 있음. * 자율탐구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임. ** 예)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능력 탁월,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회문제 연결 노력 등	<input type="checkbox"/>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함. •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u>학생의 특기사항**만을</u> 기재할 수 있음. *자율탐구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임. ** 예)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능력 탁월,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회문제 연결 노력 등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증빙자료는 학교교육계획서를 포함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또는 학생활동 산출물 등을 말함)</u> <p>[3학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함. • <u>자율탐구활동 중 소논문 실적은 정규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된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 시간만을 기재함.(2020학년도 3학년)</u> • <u>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증빙자료는 학교교육계획서를 포함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또는 학생활동 산출물 등을 말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학생활동 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은 기재할 수 없음.</u> •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p><u><증빙자료 예시> 학교교육계획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학생활동 산출물 등</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학생활동 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은 기재할 수 없음. •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해야 함. <p><u><증빙자료 예시> 학교교육계획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학생활동 산출물 등</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학생활동 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은 기재할 수 없음. •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해야 함. <p><u><증빙자료 예시> 학교교육계획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학생활동 산출물 등</u></p>
입력 가능한 창의적 체험활동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나. <u>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한다(봉사활동 제외).</u> 1) <u>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u> 2) <u>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한다.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2)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u>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u>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1) 학교교육계획에 <u>따라</u>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교육계획 ② 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3)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p> <p>※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위 1), 2), 3)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기재 가능함.</p>	<p>3)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p> <p>※ 복수의 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교육관련기관 또는 고등학교이어야 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만 기재 가능함.</p> <p>※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p>		<p>③ 국내활동</p> <p>2)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 *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체험활동</p> <p>* 학교 밖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운영 기관, 대학, 비영리단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기업 및 사설 기관 제외)으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기관</p> <p>※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교육계획 ②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p> <p>※ 학교 밖 교육 기관의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 통칭하여 입력함.</p> <p>3)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p> <p>※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장 승인 ②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p> <p>4)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p> <p>※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 ① 학교장 승인 ②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p> <p>※ 복수의 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교육관련기관 또는 고등학교이어야 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만 기재 가능함.</p> <p>※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참여 시간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 어떠한 사유(경조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질병·미인정·기타결석, 조퇴 등을 구분하지 않음)로 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함. 단,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등) 기간 동안 미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 해당 활동의 누가기록,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음.</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특기사항 기재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나. 특기사항에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횟수와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입력한다. <예시> 월 1회, 6회, 2020.03.02.-2020.07.08./5회, 4시간, 학급회·학생자치회 임원 활동기간 등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단,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함. 라.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나. 특기사항에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횟수와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예시>월1회,6회, 2021.03.02.-2021.07.08./5회, 4시간, 학급회·학생자치회 임원 재입기간 등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단, 순회교육,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라.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단, 진</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나. 특기사항에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횟수와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예시> 학급회의(월 1회), 학교폭력 예방 활동(2022.03.02.-2022.07.07./5회), 양성평등교육(4시간)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단, 순회교육,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라.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단, 진</p>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함.</p> <p>※ 두 학기 모두 '창의적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자유학기활동상황에 '진로탐색활동'이 편성된 경우에는 '자유학기활동상황'란에 입력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영역</th> <th>1학기</th> <th>2학기</th> <th>기재사항</th> </tr> </thead> <tbody> <tr> <td>창·체 '진로활동'</td> <td>×</td> <td>×</td> <td>'공란'</td> </tr> <tr> <td>자유학기 '진로탐색활동'</td> <td>○</td> <td>○</td> <td>진로희망분야, 진로특성사항 기재</td> </tr> </tbody> </table>	영역	1학기	2학기	기재사항	창·체 '진로활동'	×	×	'공란'	자유학기 '진로탐색활동'	○	○	진로희망분야, 진로특성사항 기재	<p>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p>	<p>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p>	
영역	1학기	2학기	기재사항														
창·체 '진로활동'	×	×	'공란'														
자유학기 '진로탐색활동'	○	○	진로희망분야, 진로특성사항 기재														
자치활동 임원 재임기간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1, 2학년]</p> <p>☞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활동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까지로 기준으로 입력한다.</p> <p>[3학년]</p> <p>☞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활동기간은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로 기준으로 입력한다.</p> <p>※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활동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p> <p>[기재 방법]</p> <p>○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명기간을 활동기간으로 입력함.</p> <p>○ 임원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로 입력한다.</p> <p>※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p> <p>[기재 방법]</p> <p>○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활동기간을 재임기간으로 입력함.</p> <p>○ 임원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제 종료일까지를 재임기간으로 입력함.</p>	<p>전년도와 동일</p>	<p>■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p> <p>☞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로 입력한다.</p> <p>※ 학기 단위로 선출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p> <p>[기재 방법]</p> <p>○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활동기간을 재임기간으로 입력함.</p> <p>○ 임원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제 종료일까지를 재임기간으로 입력함.</p> <p>○ 임원 선거일 이전 전입한 학생이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재임기간의 시작일은 전입일로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종료일까지를 임명기간으로 입력함. ○ 학기 중, 임원의 학적변동으로 재 선출하는 경우 신입 임원 활동기간의 시작일은 재선출일을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과 같이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 해당 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활동기간을 입력함.	○ 학기 중, 임원의 학적변동 등으로 재선출하는 경우 신입 임원 재임기간 의 시작일은 재선출일을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과 같이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 해당 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재임기간 을 입력함.		○ 학기 중, 임원의 학적변동 등으로 재선출하는 경우 신입 임원 재임기간의 시작일은 재선출일을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과 같이 학기 단위로 선출 하는 경우 해당 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재임기간을 입력함.
동아리 활동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동아리활동 영역은 자기 평가, 학생 상호 평가, 교사 관찰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특별한 활동실적 등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한다. ※ <u>학생은 연간 1개 이상의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u> ※ <u>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는 학년(학기)초에 구성하여 학년(학기)말까지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동아리를 변경한 경우, 학생이 활동한 내용을 동아리별로 모두 기록해야 함.</u>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 ≡ ※ <u>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자율동아리 실적을 제공하지 않음.</u>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청소년단체와 자율동아리 입력 범위	□ 기재요령 [1, 2학년]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생의 자율동아리활동은 학년당 한 개만 입력한다. ※ 자율동아리명을 입력하되, 필요 시 동아	■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 [1, 2, 3학년]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생의 자율동아리활동은 학년당 한 개만 입력한다. ※ 자율동아리명을 입력하되, 필요 시 동아	■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생의 자율동아리활동은 학년당 한 개만 입력한다. ※ 자율동아리명을 입력하되, 필요 시 동아리 소개를 30자 이내(동아리명과 공백	■ 문구(항목) 삭제(기재요령) ≡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학생의 자율동아리활동은 학년당 한 개만 입력한다. ※ 자율동아리명을 입력하되, 필요 시 동아리 소개를 30자 이내(동아리명과 공백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리 소개를 30자 이내(동아리명과 공백 포함)로 입력할 수 있음.</p> <p>☞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입력할 수 있으며,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은 어떠한 내용도 입력하지 않는다.</p> <p>[3학년]</p> <p>☞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생의 자율동아리활동과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서 학교장이 사전에 승인하여 참가한 활동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동아리활동 '특기사항'란에 활동 내용과 활동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p>	<p>리 소개를 30자 이내(동아리명과 공백 포함)로 입력할 수 있음.</p> <p>※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자율동아리 실적을 제공하지 않음.</p> <p>☞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입력(2021학년도 1학년은 미기재)할 수 있으며,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은 어떠한 내용도 입력하지 않는다.</p> <p>※ 2021학년도 1학년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은 미기재(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미제공)</p>	<p>포함)로 입력할 수 있음.</p> <p>※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자율동아리 실적을 제공하지 않음.</p> <p>☞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입력(2022학년도 1,2학년 미기재)할 수 있으며, 학교교육계획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은 어떠한 내용도 입력하지 않는다.</p> <p>※ 2022학년도 1,2학년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은 미기재(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미제공)</p>	<p>포함)로 입력할 수 있음.</p> <p>※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자율동아리 실적을 제공하지 않음.</p> <p>☞ 청소년단체활동 관련 내용: 삭제</p>
	자율동아리 입력대상 학생 범위		<p>■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p> <p>☞ ※ 자율동아리 입력대상 학생 범위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함.</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진로 활동 특기 사항	<p>□ 훈령 [1, 2학년] (교육부훈령 제321호 제13조제6항)</p> <p>☞ 제2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p> <p>[3학년] (교육부훈령 제243호 제13조 제6항)</p> <p>☞ 제1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p>	<p>■ 문구(항목) 수정(훈령) (제13조제6항)</p> <p>☞ 제2항 및 제3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활동실적이 우수한 사항과 각종 진로 검사 및 진로상담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 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1, 2학년]</p> <p>☞ 학생의 진로희망(희망분야 또는 희망 직업)은 ‘특기사항’ 내의 ‘희망분야’란에 입력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상급 학교 진학 시 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p> <p>※ 기재 누락과 구분하기 위해 학생이 진로 희망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입력함. 〈예시〉 ‘진로탐색 중임’, ‘현재 진로희망 없음’ 등으로 입력할 수 있음.</p> <p>☞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2) 학생의 특기·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3) 학생·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4)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5)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상담 및 권고 내용 <p>[3학년]</p> <p>☞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한다.</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학생의 진로희망(희망분야 또는 희망 직업)은 ‘특기사항’ 내의 ‘희망분야’란에 입력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상급 학교 진학 시 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p> <p>※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은 커리어넷 (www.career.go.kr) 직업정보의 직업 분류를 참고함.</p> <p>※ 기재 누락과 구분하기 위해 학생이 진로 희망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입력함. 〈예시〉 ‘진로탐색 중임’, ‘현재 진로희망 없음’ 등으로 입력할 수 있음.</p> <p>☞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2) 학생의 특기·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3) 학생·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4)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5)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상담 및 관찰·평가 내용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1)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2) 학생의 특기·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3) 학생·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4)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5)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상담 및 권고 내용																		
	직업기초능력평가에 응시한 경우 입력 예시		■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 ☞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학생이 직업기초능력평가에 응시한 경우 다음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학년</th> <th colspan="3">창의적 체험활동상황</th> </tr> <tr> <th>영역</th> <th>시간</th> <th>특기사항</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진로 활동</td> <td>4</td> <td>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영역) 자가진단평가에 참여함.</td> </tr> <tr> <td>3</td> <td>진로 활동</td> <td>5</td> <td>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 영역) 본평가에 참여함.</td> </tr> </tbody> </table>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1	진로 활동	4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영역) 자가진단평가에 참여함.	3	진로 활동	5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 영역) 본평가에 참여함.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학생이 직업기초능력평가에 응시한 경우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다음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 <예시>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국어, 의사소통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 영역) 자가진단평가에 참여함(5시간). <예시>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국어, 의사소통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 영역) 본평가에 참여함(5시간).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학생이 직업기초능력평가에 응시한 경우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다음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 <예시(1~2학년)>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 영역) 자가진단평가에 참여함. <예시(3학년)>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 영역) 본평가에 참여함.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1	진로 활동	4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영역) 자가진단평가에 참여함.																	
3	진로 활동	5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 영역) 본평가에 참여함.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나,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봉사활동 실적의 활동 내용란 기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활동 내용’란에는 객관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 학생의 성장, 감상 등 학생의 특기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내용의 입력은 불가함.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봉사 활동 실적 입력 불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요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소년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수정 및 신설(기재요령) ☞ 다음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1)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현형 횡수 인정 범위	□ 기재요령 ※ 다만, 현형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연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함.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다만, 현형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당해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함.	전년도와 동일
훈령 제243호 (2018.3.1.) 이전의 훈령이 적용된 학생의 복귀시 '희망분야란'에 자동 반영되는 내용	■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 ☞ 4) 교육부훈령 제280호 이전 훈령의 적용을 받던 고등학생이 학업중단(휴학, 자퇴) 후 복귀(복학, 재·편입학)로 교육부훈령 제280호 이후의 훈령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진로 희망사항' 중 '진로희망'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 내 '희망분야'란에 자동으로 반영되며, '희망사유'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5) 다만, '희망분야'에 기재된 내용은 상급학교 진학 시 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4) 교육부훈령 제280호 이전 훈령의 적용을 받던 고등학생이 휴학, 자퇴, 퇴학, 제적 후 복학, 재·편입학으로 교육부훈령 제280호 이후의 훈령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진로 희망사항' 중 '진로희망'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 내 '희망분야'란에 자동으로 반영되며, '희망사유'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4) 교육부훈령 제280호 이전 훈령의 적용을 받던 고등학생이 휴학, 자퇴, 퇴학, 제적 후 복학, 재·편입학으로 교육부훈령 제280호 이후의 훈령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진로 희망사항' 중 '진로희망'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 내 '희망분야'란에 자동으로 반영되며, '희망사유'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유의 사항	■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 ☞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하며,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¹⁾ , 상호명, 강사명 ²⁾ 은 입력하지 않음.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 ☞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하며,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¹⁾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²⁾ 은 입력하지 않음.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 ☞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하며,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¹⁾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²⁾ 은 입력하지 않음.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 ☞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하며,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¹⁾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²⁾ 은 입력하지 않음. 1)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 <u>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u></p> <p>** <u>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u></p> <p>-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p> <p>***<u>강사명</u></p> <p>-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p>	<p>*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p> <p>**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p> <p>※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p> <p>-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p> <p>***<u>강사명</u></p> <p>-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p>		<p>*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p> <p>**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p> <p>※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p> <p>-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p> <p>- <u>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의 경우,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 통칭하여 입력함.</u></p> <p>2) 강사명</p> <p>-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p>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비고'란 입력 내용	<p>□ 훈령</p> <p>☞ ⑤ 중·고등학교의 '비고'란에는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p>■ 문구 수정 및 추가(훈령)</p> <p>☞ ⑤ 중·고등학교의 '비고'란에는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 밖 교육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신설(훈령) ☞ ⑥2.전문 교과II의 실무과목: 능력단위별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4.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II 실무과목: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충학습의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 ⑦ 제6항에 따른 중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입력하고,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되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수정 및 삭제(훈령) ☞ ⑥2.전문 교과II의 실무 과목: 능력단위 기반의 과목별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4. < 삭제 > ⑦ 제6항에 따른 중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입력하고,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되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전년도와 동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성적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령 ☞ ⑮ 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수정(훈령) ☞ ⑮ 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의 성적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신설(훈령) ☞ ⑮ 고등학교에서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1.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및 고시 외 과목 포함), 교양 교과(군): '교과', '과목', '단위수'를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 2. 전문교과II(고시 외 과목 포함):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p>■ 훈령 신설</p> <p>☞ ⑩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제4항, 제8항, 제10항, 제15항의 '이수단위' 또는 '단위수'를 '학점수'로 본다.</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p>■ 문구 수정(훈령)</p> <p>☞ ⑩학점제를 적용받는 고등학교는 제4항, 제8항, 제10항, 제15항의 '이수단위' 또는 '단위수'를 '학점수'로 본다.</p>	<p>■ 문구 추가(훈령)</p> <p>☞ ⑩학점제를 적용받는 고등학교는 제4항, 제8항, 제10항, 제15항, 제16항의 '이수단위' 또는 '단위수'를 '학점수'로 본다.</p>
수행평가 만으로 가능한 과목 범위	<p>■ 문구(항목) 수정(훈령)</p> <p>☞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국가 재난 준하는 상황에서의 평가 운영	<p>□ 훈령(별표9) 신설</p> <p>☞ 1.라. 다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하거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필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과제형 수행평가	<p>■ 문구 수정(훈령 별표9)</p> <p>☞ 4.나.4)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공통교육과 정 성적 산출	<p>□ 훈령(별표9)</p> <p>☞ 4.라.마)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p>■ 문구 수정(훈령 별표9)</p> <p>☞ 4.라.마)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 범위		<p>□ 훈령(별표9)</p> <p>☞ 4. 중·고등학교 평가 방법</p> <p>라. 6)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p> <p>가)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한 학교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학과별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p>	<p>■ 문구 수정(훈령 별표9)</p> <p>☞ 4. 중·고등학교 평가 방법</p> <p>라. 6)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p> <p>가)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한 학교는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학과별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p>■ 훈령(별표9) 신설</p> <p>☞ 4. 중·고등학교 평가 방법</p> <p>라. 6. 바)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 교과Ⅱ 실무과목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별도로 설정하되, 최소 성취수준의 성취율은 성취도 E범위 내에서 담당 교사가 과목</p>	전년도와 동일	<p>■ 훈령(별표9) 수정</p> <p>☞ 4. 중·고등학교 평가 방법</p> <p>라. 6. 바)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 교과Ⅱ 실무과목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별도로 설정하되, 최소 성취수준의 성취율은 성취도 E범위 내에서 담</p>	<p>■ 훈령(별표9) 수정</p> <p>☞ 4. 중·고등학교 평가 방법</p> <p>라. 6. 바) 학점제를 적용받는 고등학교에 편성된 국어·수학·영어의 공통과목,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운영</p>
학점제 적용 고등학교의 '최소 성취수준 설정'		<p>■ 훈령(별표9) 신설</p> <p>☞ 4. 중·고등학교 평가 방법</p> <p>라. 6. 바)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 교과Ⅱ 실무과목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별도로 설정하되, 최소 성취수준의 성취율은 성취도 E범위 내에서 담당 교사가 과목</p>	전년도와 동일	<p>■ 훈령(별표9) 수정</p> <p>☞ 4. 중·고등학교 평가 방법</p> <p>라. 6. 바)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 교과Ⅱ 실무과목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별도로 설정하되, 최소 성취수준의 성취율은 성취도 E범위 내에서 담</p>	<p>■ 훈령(별표9) 수정</p> <p>☞ 4. 중·고등학교 평가 방법</p> <p>라. 6. 바) 학점제를 적용받는 고등학교에 편성된 국어·수학·영어의 공통과목,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운영</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p>		<p>당 교사가 과목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p>	<p>의 세부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p>																																																										
	<p>최소 성취수준 개념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계획 마련</p>				<p>■ 문구 수정 및 신설(해설)</p> <p>☞ 1.가.5) ‘최소 성취수준’은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의미한다.</p> <p>※ 학기(학년)초에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포함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계획을 마련(학교 교육계획 혹은 별도 관리)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여야 한다.</p>																																																										
	<p>‘학교 밖 교육’의 성적 처리 유형</p>	<p>1□ 해설</p> <p>☞ 1.나. 보통교과는 ‘성취도(A-B-C-D-E)’와 ‘석차등급(1등급-9등급)’으로, 전문교과는 ‘성취도(A-B-C-D-E)’로 성적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p> <p>〈예시〉 2015 개정 교육과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th> <th colspan="2">성취도(수강자수)</th> <th rowspan="2">석차 등급</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원점수</th> <th>과목평균</th> <th>표준편차</th> <th>성취도</th> <th>수강 자수</th> </tr> </thead> <tbody> <tr> <td>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 과목</td> <td>○</td> <td>○</td> <td>○</td> <td>교과(군)별 3단계 또는 5단계</td> <td>○</td> <td>-</td> <td>•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td> </tr> </tbody> </table>	구 분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 등급	비 고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 과목	○	○	○	교과(군)별 3단계 또는 5단계	○	-	•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p>■ 문구 수정 및 신설(해설)</p> <p>☞ 1.나. 보통교과는 ‘성취도(A-B-C-D-E)’와 ‘석차등급(1등급-9등급)’으로, 전문교과는 ‘성취도(A-B-C-D-E)’로 성적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th> <th colspan="2">성취도 (수강자수)</th> <th rowspan="2">석차 등급</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원 점수</th> <th>과목 평균</th> <th>표준 편차</th> <th>성취도</th> <th>수강 자수</th> </tr> </thead> <tbody> <tr> <td>학교 간 보통교과 통합 과목</td> <td>○</td> <td>○</td> <td>○</td> <td>교과(군) 별 3단계 또는 5단계</td> <td>○</td> <td>=</td> <td>•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제외·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td> </tr> <tr> <td>학교 밖 교육</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 일반고등학교에서 학습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 표기</td> </tr> <tr> <td>전문교과 II</td> <td>○</td> <td>○</td> <td>○</td> <td>5단계</td> <td>○</td> <td>=</td> <td>• 사인수요 및 중점 고등학교 특성화고 등 일반 고등학교 진 연계성 학과에서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하는 경우</td> </tr> </tbody> </table>	구 분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비 고	원 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학교 간 보통교과 통합 과목	○	○	○	교과(군) 별 3단계 또는 5단계	○	=	•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제외·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학교 밖 교육	-	-	-	-	-	-	• 일반고등학교에서 학습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 표기	전문교과 II	○	○	○	5단계	○	=	• 사인수요 및 중점 고등학교 특성화고 등 일반 고등학교 진 연계성 학과에서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하는 경우
구 분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 등급	비 고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 과목	○	○	○	교과(군)별 3단계 또는 5단계	○	-	•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구 분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비 고																																																								
	원 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학교 간 보통교과 통합 과목	○	○	○	교과(군) 별 3단계 또는 5단계	○	=	•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제외·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학교 밖 교육	-	-	-	-	-	-	• 일반고등학교에서 학습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 표기																																																								
전문교과 II	○	○	○	5단계	○	=	• 사인수요 및 중점 고등학교 특성화고 등 일반 고등학교 진 연계성 학과에서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하는 경우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	□ 해설 ☞ 1.다.2)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전문교과Ⅱ를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으로 개편하여 국가직무능력 표준(NCS)과 연계를 강화하였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 추가(해설) ☞ 1.다.2)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전문교과Ⅱ를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으로 개편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를 강화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체 현장실습, 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 등의 성적처리 방안	□ 해설 ☞ 1.라.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체 현장실습, 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 등의 성적처리 방안은 '별표 9'의 해설 '라목 4)의 하)' 직업과정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안을 따른다.	■ 문구 수정 및 추가(해설) ☞ 1.라.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체 현장실습, 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 등의 성적처리 방안은 '별표 9'의 해설 '다목 3)의 하)' 직업과정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안을 따른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 수정 및 추가(해설) ☞ 1.라.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체 현장실습, 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 등의 성적처리 방안은 '별표 9'의 해설 '다목 3)의 파)' 직업과정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하) 현장실습생 성적처리 방식을 따른다.
	'비고'란 자동 표시 내용	□ 해설 ☞ 1.마.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로 이수한 과목의 '석차등급'란은 공란으로 두며, '비고'란에는 자동으로 '공동'으로 표시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 수정 및 신설(해설) ☞ 1.마.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의 '석차등급'란은 공란으로 두며, '비고'란에는 자동으로 '공동'으로 표시된다. 바.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의 '비고'란에는 자동으로 '학교 밖 교육'이 표시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술 시 유의 사항		■ 문구 신설(해설) ☞ 1.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학생들의 교과 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 수정 및 추가(해설) ☞ 1.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학생들의 교과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술은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근거하여 학생 개인의 성취과정과 성취특성이 명료히 드러나도록 하되,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단순 나열이나 이미 성취기준에 명시된 지식의 단순 서술은 지양함.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수정(해설) ☞ 4.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평가 결과 후속조치(이의제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항목) 이동(훈령 별표9) ☞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바. 4)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평가의 목표 및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수정 및 신설(별표9 해설) ☞ 2) 학교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문항정보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수정(별표9 해설) ☞ 나. 1) 본 훈령에서 '지필평가'는 '중간 또는 기말고사(1회, 2회고사 등)와 같은 '일제식 정기고사'를 의미하며, '문항정보표'의 구성에 따라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구분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최소 성취수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신설(별표9 해설) ☞ 다.1).가).(4)공통과목 국어, 수학, 영어 및 전문교과II 실무과목의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설정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모듬활동 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수정 및 추가(별표9 해설) ☞ 다.2).자) 수행평가는 학생의 학습과제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듬 활동 등을 평가할 때에는 개별 학생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학습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신설 및 수정(별표9 해설) ☞ 다.2).자) 수행평가는 학생의 학습과제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차)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듬 활동 등을 평가할 때에는 개별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개인별 학습과제에 대한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야 함.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설(별표 9) ☞ 라.4).파).(1)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 (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설(별표 9) ☞ 다.3).파).(1)이하 내용 전년도와 동일 	☞ 다.3).타).(1)이하 내용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추가(별표9 해설) ☞ 다.3).타).(1)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 (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한다. 	
현장 실습생의 성적 처리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설(별표 9) ☞ 다.3).하).(1)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이수여부, 현장실습대상기관, 실습기간을 해당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수정(별표9 해설) ☞ 다.3).하).(1)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이수 여부, 실습기간을 해당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 해설(별표 9)</p> <p>☞ (바) 현장실습을 교과목에 포함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평가, 기록 방법에 따르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서술식으로 입력한다.</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p>■ 문구 수정(별표9 해설)</p> <p>☞ (바) 현장실습을 교과목에 포함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평가, 기록 방법에 따르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서술식으로 입력한다.</p>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신설(별표9 해설)</p> <p>(2) 특수교육 대상자의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는 이수 여부, 현장실습대상기관, 실습 기간을 해당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력하며, (1)의 (가)~(바)의 내용을 준용하여 입력할 수 있다.</p> <p>※ 이 때, '현장실습 직무분야'는 교육과정의 해당 교과(군) 중에서 입력함</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p>■ 문구 수정(별표9 해설)</p> <p>☞ (2) 특수교육 대상자의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는 이수 여부, 실습 기간을 해당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력하며, (1)의 (가)~(바)의 내용을 준용하여 입력할 수 있다.</p> <p>※ 이 때, '현장실습 직무분야'는 교육과정의 해당 교과(군) 중에서 입력함</p>	전년도와 동일
공동교육과정 성적처리 방식	<p>□ 문구(항목) 신설(별표9 해설)</p> <p>(라. 4), 너))</p> <p>☞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공동교육과정 성적처리 방식</p> <p>(1) 성적산출 요령: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하고, 본 훈령 제15조제15항의 학교 간 통합교과로 이수한 진로선택 과목의 성적산출 방식 *에 따라 성적 산출한다.</p> <p>* <u>학년별 성적 산출 방식</u></p>	<p>□ 항목 조정(별표9 해설)</p> <p>(다. 3), 너)) 신설 및 수정</p> <p>☞ 너)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 성적처리 방식</p> <p>(1)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등 모두 포함)</p> <p>•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전문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p>	<p>□ 문구 수정 및 추가(별표9 해설)</p> <p>☞ 가)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 성적처리 방식</p> <p>(1)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등 모두 포함)</p> <p>•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전문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p> <p>•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일</p>	<p>□ 문구 수정 및 추가(별표9 해설)</p> <p>☞ 다.3).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성적처리 방식</p> <p>(1)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등 모두 포함)</p> <p>•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전문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p> <p>•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일</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2020학년도 3학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3단계), 수강자수 ※ 공동교육과정은 석차등급 미 산출</p> <p>2020학년도 1, 2학년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 성취도(3단계), 수강자수</p>	<p>• <u>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과정(구 종합고 직업계열) 간 전문 교과Ⅱ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Ⅱ 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Ⅱ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u></p> <p>※ 구체적인 성적 산출 방식은 본 훈령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제15항 및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등학교」 103쪽 <예시>표 참조</p> <p>(2) 단, <u>농어촌·도서벽지 등 교육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거점학교 학생과 타교 학생을 분리하여 타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거점학교 내 동일과목 유무와 상관없이 별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u></p> <p>※ 농어촌·도서벽지 등 교육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의 별도 개설·운영 및 별도 성적 산출 가능(교육부 고교혁신과-3378, 2020.12.29.).</p>	<p>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간 전문 교과Ⅱ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Ⅱ 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Ⅱ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p> <p>※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p> <p>※ 구체적인 성적 산출 방식은 본 훈령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제15항 및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등학교」 103쪽 <예시>표 참조</p> <p>(2) 단, <u>농어촌·도서벽지 등 교육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거점학교 학생과 타교 학생을 분리하여 타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거점학교 내 동일과목 유무와 상관없이 별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u></p> <p>※ 농어촌·도서벽지 등 교육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의 별도 개설·운영 및 별도 성적 산출 가능(교육부 고교혁신과-3378, 2020.12.29.).</p>	<p>반고 직업계열 학과 간 전문 교과Ⅱ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Ⅱ 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Ⅱ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p> <p>※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p> <p>※ 구체적인 성적 산출 방식은 본 훈령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제15항 및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등학교」 102쪽 <예시>표 참조</p> <p>(2) <u>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이라도 별도로 개설·운영하고, 별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u></p>
학교 밖 교육 성적처리 방식					<p>□ 문구 신설(별표9 해설)</p> <p>☞ 다.3)너) 학교 밖 교육 성적처리 방식</p> <p>(1) <u>일반고등학교 학교 밖 교육 :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및 고시 외 과목 포함), 교양</u></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교과(군)</p> <p>-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교과', '과목', '단위수' 및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한다. 다만,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객관적 교육내용만을 입력한다.</p> <p>〈일반고 학교 밖 교육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예시〉</p> <table border="1" data-bbox="1710 604 2093 669"> <tr> <td>과목</td> <td>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d> </tr> <tr> <td>과목명: 학교 밖 교육을 통해 ○단위 이수함.</td> <td></td> </tr> </table> <p>(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의 학교 밖 교육: 전문교과II</p> <p>- 과목별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 방법: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 5단계(수강자수)' 및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다.</p> <p>〈직업계고 학교 밖 교육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예시〉</p> <table border="1" data-bbox="1710 1084 2093 1198"> <tr> <td>과목</td> <td>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밖 교육 직무분야 ○○ (예) 기계, 디자인, 재료, 전자 등 기간: 20○○.○○.○○ ~ 20○○.○○.○○ 교육내용: ○○○○, ○○○○, ○○○○ </td> <td></td> </tr> </table>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학교 밖 교육을 통해 ○단위 이수함.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밖 교육 직무분야 ○○ (예) 기계, 디자인, 재료, 전자 등 기간: 20○○.○○.○○ ~ 20○○.○○.○○ 교육내용: ○○○○, ○○○○, ○○○○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학교 밖 교육을 통해 ○단위 이수함.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밖 교육 직무분야 ○○ (예) 기계, 디자인, 재료, 전자 등 기간: 20○○.○○.○○ ~ 20○○.○○.○○ 교육내용: ○○○○, ○○○○, ○○○○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학습과정 입력방식	<p><input type="checkbox"/> 해설(별표 9)</p> <p>☞ 마.7) 전입생 미이수 교과목 보충학습과정 입력 방식</p> <p>가)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중학교의 특정 교과목 또는 고등학교의 공통과목</p>	<p>■ 문구 수정 추가(별표9 해설)</p> <p>☞ 마.7) 전·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입력 방식</p> <p>가)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p>	<p>■ 문구 수정(별표9 해설)</p> <p>☞ 마. 7)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입력 방식</p> <p>가)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p>	<p>■ 문구 수정(별표9 해설)</p> <p>☞ 마. 7)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입력 방식</p> <p>가)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p>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한함)을 이수하지 못하여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보충 학습 과정'을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포함	한 경우에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보충 학습 과정'을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수업)'으로 실시한 경우를 포함하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함.	한 경우에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보충 학습 과정'을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수업)'으로 실시한 경우를 포함하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함.	
학점제 적용 실무 과목의 보충학습과 정 이수 입력 방식	<p>■ 문구(항목) 신설(별표9 해설)</p> <p>☞ 마.8)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II 실무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및 보충학습과정 이수 입력 방식</p> <p>가)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문교과II 실무과목(2020학년도 기준 1학년부터 순차적 적용)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성취도 E범위 내에서 별도로 설정한다.(예: 성취율 40% 미만)</p> <p>나) 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하여 '보충 학습 과정'에 참여한 경우 이수 내용을 '교과 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명, 이수시간, 이수기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p>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 및 삭제(별표9 해설)</p> <p>☞ 마.8)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II 실무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설정</p> <p>가) 학점제를 적용받는 <u>특성화고등학교(2022학년도 기준 1학년부터 순차적 적용)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2020학년도 기준 1학년부터 순차적 적용)의 전문교과II 실무과목</u>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성취도 E범위 내에서 별도로 설정한다.(예: 성취율 40% 미만)</p> <p>나) <삭제></p>	<p>■ 문구(항목) 수정(별표9 해설)</p> <p>☞ 마.8) <u>전체 고등학교에 편성된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국어, 수학, 영어와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II 실무과목은 과목별 학업 성취율 40%를 최소 성취수준으로 설정하되, 이에 따른 분할 점수는 해당과목별로 학교가 정할 수 있다.</u></p> <p>※ <u>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3111(2021.8.24.))</u></p>	
방송통신고 학교 외 학습경험 과목이수 입력방식		<p>■ 해설(별표9, 마. 9)) 신설</p> <p>☞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제3조2에 따라 학교 외 학습경험의 과목 이수 인정을 받은 방송통신고등학교 과목 이수 입력 방식</p> <p>가) 「<u>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u>」 제3조의2에 따라</p>	전년도와 동일	<p>■ 해설(별표9, 마. 9)) 수정</p> <p>☞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제3조2에 따라 학교 외 학습경험의 과목 이수 인정을 받은 방송통신고등학교 과목 이수 입력 방식</p> <p>가) 「<u>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u>」 제3조의2에 따라 과목</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과목 이수를 인정받은 학생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이수시간(단위)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이수를 인정받은 학생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이수시간(단위)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표준 가이드라인	<p>■ 문구(항목) 수정·추가(기재요령)</p> <p>☞ 학생의 수업 참여의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함.</p> <p>• 방과후학교 활동은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3학년에 한하여 교과담당 또는 담임 교사가 강좌명(주요내용)과 이수시간만을 기재함.</p> <p>•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 보고서명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p> <p>* 연구 보고서 작성 가능 과목(2015 개정 교육과정):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함.</p> <p>• 방과후학교 활동은 기재하지 않음.</p> <p>•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보고서(소논문)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p> <p>*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 가능 과목: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특기사항) 입력 범위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고등학교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기초교과(군)’과 ‘탐구교과(군)’의 과목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고 그 외의 과목은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력 대상 범위를 정한다.</p> <p>※ 단, 과목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p> <p>1)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해서는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 위탁교육 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 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함.	<p>〈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특이사항 없음.</p> <p>〈예시〉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p> <p>〈예시〉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특이사항 없음.</p> <p>※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 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p>		
	전문교과II의 기초과목, 실무과목 능력단위 포함 입력안내	<p>■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p> <p>☞ 전문교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를 이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다.</p> <p>- 입력 서식</p> <p>※ (학기명) 과목명: [능력단위 : 능력단위명]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p> <p>〈예시〉 (1학기)식품품질관리: [능력단위:입고검사] 입고 검사 절차의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제작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입고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p>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전문교과II의 기초과목, 실무과목은 과목별로 입력하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능력단위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다.</p> <p>- 입력 서식</p> <p>※ (학기명) 과목명: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단, 능력단위명 기재시 “[능력단위: 능력단위명]”으로 표기)</p> <p>〈예시〉 (1학기)식품품질관리: 식품 제조의 전과정에서 품질관리의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고 있음. [능력단위: 입고검사] 이수 시 발주서에 따라 원·부재료의 입고 품목을 확인하고 각 품목별 입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함. 특히 샘플 검사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결과를 기록한 후 발표함.</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전문교과II의 기초과목, 실무과목은 과목별로 입력하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능력단위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다.</p> <p>- 입력 서식</p> <p>※ (학기명) 과목명: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단, 능력단위명 기재시 “[능력단위: 능력단위명]”으로 표기)</p> <p>〈예시〉 (1학기)식품품질관리: 식품 제조의 전과정에서 품질관리의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고 있음. [능력단위: 입고검사] 입고 시 발주서에 따라 원·부재료의 입고 품목을 확인하고 각 품목별 입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함. 특히 샘플 검사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결과를 기록한 후 발표함.</p>
	개인별 세부능력 및	■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	■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특기사항 입력사항	<p>☞ 사.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학교: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 전입생 미이수 보충학습 과정: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중학교의 특정 교과목 또는 고등학교의 공통과목(2015 개정 교육 과정에 한함)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했는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 방과후 학교: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2020학년도의 경우 3학년에 한함) • 영재교육: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발명교육: 당해 학기에 기술·가정, 과학 교과 모두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수강하였으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성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은 과목에 한하여 이수내용 기재) 	<p>☞ 사.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학교: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 학력인정 대안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전입교와 다른 경우 • 전·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했는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 방과후 학교: 삭제 • 영재교육: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발명교육: 당해 학기에 기술·가정, 과학 교과 모두 개설되지 않은 경우 •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에 따른 과목 이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수강하였으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성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은 과목에 한하여 이수내용 기재) 	<p>☞ 사.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학교: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 학력인정 대안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전입교와 다른 경우 •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했는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영재교육: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발명교육: 당해 학기에 기술·가정, 과학 교과 모두 개설되지 않은 경우 •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에 따른 과목 이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수강하였으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성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은 과목에 한하여 이수내용 기재) 	
	실무과목의 '보충학습 과정' 이수 여부 입력	<p>■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p> <p>☞ 바.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의 최소 성취수준에 미도</p>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삭제(기재요령)</p> <p>☞ 바. <삭제></p>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달한 경우 '보충학습 과정' 이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p> <p>- 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하여 '보충학습 과정'을 이수한 경우</p> <p>※ (학기명) 과목명: 보충학습 과정에 참여하여 OO시간(2021.00.00.-2021.00.00.) 이수함.</p>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수업) 성적 처리 및 입력 방식	<p>□ 기재요령</p> <p>☞ 나.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수업) 성적처리 및 입력 방식 다) 전입학 및 귀국 등으로 중학교의 특정 교과목 또는 고등학교의 공통과목(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한함)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라인수업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입력방법은 '별표 9'의 해설 '마목의 7) 전입생 미이수 교과목 보충학습과정 입력 방식 참조).</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가.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수업) 성적처리 및 입력 방식 다) 전·입학 및 귀국 등으로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라인수업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입력방법은 별표 9의 해설 '마목의 7) 전·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입력 방식 참조).</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가.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수업) 성적처리 및 입력 방식 다) 전·편입학 및 귀국 등으로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라인수업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입력방법은 별표 9의 해설 '마목의 7)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입력 방식 참조).</p>	전년도와 동일	
영재교육 이수내용 입력	<p>□ 기재요령</p> <p>☞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에 의거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만 입력한다.</p> <p>[기재 방법]</p> <p>○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p> <p>※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p>	<p>■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 신설(기재요령)</p> <p>☞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령 제 3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만 입력한다.</p> <p>※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이수내용을 입력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관 명칭은 입력하지 않음.</p> <p>〈예시〉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10시간을 이수함. / 영재학급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만 입력한다.</p> <p>※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이수내용을 입력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관 명칭은 입력하지 않음.</p> <p>〈예시〉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10시간을 이수함. / 영재학급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p>	<p>■ 문구(항목) 수정(위치 포함) 및 추가(기재요령)</p> <p>☞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만 입력한다(근거법령: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p> <p>※ 단,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p> <p>[기재 방법]</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교육원) 이수시간을 입력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학교 명칭은 입력하지 않음.</p> <p>〈예시〉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10시간을 이수함. / 영재학급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p>	<p>(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p> <p>[기재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 2021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또는 [과목별 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 식별자를 전과 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등록한 후 대입전형자료를 생성하면 해당 내용이 제외됨. <p>〈예시〉<@>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p> <p>※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p>	<p>(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p> <p>[기재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 2022학년도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또는 [과목별 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 식별자를 전과 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등록한 후 대입전형자료를 생성하면 해당 내용이 제외됨. <p>〈예시〉<@>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p> <p>※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이수내용을 입력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관 명칭은 입력하지 않음. <p>〈예시〉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10시간을 이수함. / 영재학급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또는 [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 식별자를 전과 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등록한 후 대입전형자료를 생성하면 해당 내용이 제외됨. <p>〈예시〉<@>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력된 글자 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글자 수에 산입되지 않음. <p>※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p>
발명교육 이수내용	<p>□ 기재요령</p> <p>☞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교육실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항에 의거 관련 교과(기술·가정 또는 과학)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p> <p>※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는 초급(기초)·중급·고급(심화) 또는 특별과정 등 발명교육실 정규과정 교육실적 자료를 입력함(학교 자체 실시 과정 제외).</p>	<p>■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 신설(기재요령)</p> <p>☞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교육실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라 관련 교과(기술·가정 또는 과학)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p> <p>※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는 초급(기초)·중급·고급(심화) 또는 특별과정 등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교육실적 자료를 입력하며(학교 자체 실시 과정 제외), 이 경우 구체적인 센터의 명칭을 입력하지 않음.</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교육실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라 관련 교과(기술·가정 또는 과학)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p> <p>※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는 초급(기초)·중급·고급(심화) 또는 특별과정 등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교육실적 자료를 입력하며(학교 자체 실시 과정 제외), 이 경우 구체적인 센터의 명칭을 입력하지 않음.</p>	<p>■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p> <p>☞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교육실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라 관련 교과(기술·가정 또는 과학)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만 입력한다.</p> <p>※ 단,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p> <p>※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는 초급(기초)·중급·고급(심화) 또는 특별과정 등 발명교육</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 2021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또는 [과목별 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 식별자를 전과 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등록한 후 대입전형자료를 생성하면 해당 내용이 제외됨.</p> <p>〈예시〉 <@>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한 ‘발명·특허 기초과정(20시간)’을 수료함.<@></p> <p>※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발명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p>	<p>○ 2022학년도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또는 [과목별 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 식별자를 전과 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등록한 후 대입전형자료를 생성하면 해당 내용이 제외됨.</p> <p>〈예시〉 <@>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한 ‘발명·특허 기초과정(20시간)’을 수료함.<@></p> <p>※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발명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p>	<p>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교육실적 자료를 입력하며(학교 자체 실시 과정 제외), 이 경우 구체적인 센터의 명칭을 입력하지 않음.</p> <p>○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또는 [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 식별자를 전과 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등록한 후 대입전형자료를 생성하면 해당 내용이 제외됨.</p> <p>〈예시〉 <@>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한 ‘발명·특허 기초과정(20시간)’을 수료함.<@></p> <p>○ 입력된 글자 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글자 수에 산입되지 않음.</p> <p>※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발명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p>
유의 사항	<p>■ 문구(항목) 수정·추가(기재요령)</p> <p>☞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입력 불가 항목</p> <p>- 각종 공인어학시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도서출간 사실, 지식재산권(특허, 실</p>	<p>■ 문구(항목) 수정·추가(기재요령)</p> <p>☞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입력 불가 항목</p> <p>- 각종 공인어학시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p> <p>-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p> <p>-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p> <p>-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p> <p>-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p> <p>-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p>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p> <p>☞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입력 불가 항목</p> <p>- 각종 공인어학시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p> <p>-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p> <p>(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p> <p>-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p> <p>-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p> <p>-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p> <p>-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 K-MOOC</p> <p>※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의 명칭을 단순행사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행위 불가</p> <p>※ 위 항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수상경력'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여서는 안 됨.</p> <p>-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소논문 관련사항 일체는 기재할 수 없으며,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1, 2학년)</p>	<p>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p> <p>- 도서출간 사실,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p> <p>-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p> <p>-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기재 금지한 사항 일체</p> <p>- K-MOOC, MOOC, KOCW</p> <p>-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사항 일체는 기재할 수 없으며,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p> <p>※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의 명칭을 단순행사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행위 불가('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수상경력'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변경 입력 불가)</p> <p>※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발명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p>		<p>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p> <p>- 도서출간 사실,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p> <p>-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p> <p>-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기재 금지한 사항 일체</p> <p>- K-MOOC, MOOC, KOCW</p> <p>-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사항 일체는 기재할 수 없으며,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p> <p>※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의 명칭을 단순행사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행위 불가('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수상경력'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변경 입력 불가)</p> <p>※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발명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p>
독서 활동 상황	독서활동 상황 입력	<p>□ 훈령</p> <p>☞ 중·고등학교의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p>	<p>■ 문구(항목) 수정(훈령)</p> <p>☞ 중·고등학교의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단위로 입력한다.</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표준 가이드라인	<p>■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p> <p>☞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p>	<p>■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p> <p>☞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 ※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정기간행물은 입력 불가). ※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유의 사항	<p>■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p> <p>☞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독서활동상황'란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함. -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체험활동, 자유학기 등)에 입력 할 수 있음. 	<p>■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p> <p>☞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독서활동상황'란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함. -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체험활동 등)에 입력 할 수 있음. - 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을 모두 읽은 경우,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독서활동상황'은 제공하지 않음.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의 기재내용 및 누가기록 관리	<p>□ 해설</p> <p>☞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p> <p>※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p>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p> <p>※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p> <p>※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누가 기록하는 경우에는 [학생생활]-[행동특성및종합의견]-[행동특성및종합의견]에서 입력함.</p>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학교 폭력 관련 내용</p>	<p>■ 문구(항목) 추가(해설)</p> <p>☞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p> <p>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입력을 유보하고, 해당 조치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p> <p>※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에도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함.</p> <p>※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하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입력함.</p> <p>2) 위 ‘다’항 ‘1)’에 따라 조치사항 입력이 유보된 가해학생이 동일학교급[초등학교의 경우 가해학생 조치 결정일(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로부터 3년내]에서 다시 다른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입력이 유보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모두 입력한다.</p> <p>※ 조치 결정일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함.</p>	<p>■ 문구(항목) 추가(해설)</p> <p>☞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p> <p>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입력을 유보(20.3.1. 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하여 적용)하고, 해당 조치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p> <p>※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에도 각각의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함.</p> <p>※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하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각 해당 영역에 입력함.</p> <p>※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이 비공개 문서로 관리되고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관리함.</p> <p>※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p>	<p>전년도와 동일</p>	<p>■ 문구(항목) 추가(해설)</p> <p>☞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p> <p>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입력을 유보(20.3.1. 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하여 적용)하고, 해당 조치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p> <p>※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에도 각각의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함.</p> <p>※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하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각 해당 영역에 입력함.</p> <p>※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이 비공개 문서로 관리되고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관리함.</p> <p>※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 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되, 최초 조치 결정일자는 변경하지 않음.</p> <p>※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생활]-[행동특성및종합의견]-[행동특성및종합의견]에서 해당학생에 대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학교생활기록부 반영기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함.</p> <p>〈예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경우</p> <p>〈예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동일 일자에 동일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p> <p>〈예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사항을 2개 이상(제1호, 제7호) 병과하여 받은 경우</p>	<p>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고,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조치를 미이행 했을 경우, 조치 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함.</p> <p>- 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 결과 청구가 기각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당시 남은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여부 결정함.</p> <p>2) 위 '다'항 '1)'에 따라 조치사항 입력이 유보된 가해학생이 동일학교급에서 다시 다른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입력이 유보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모두 입력한다.</p> <p>※ 조치 결정일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함.</p> <p>〈예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예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7호의 경우</p> <p>〈예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동일 일자에 동일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p> <p>〈예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사항을 2개 이상(제1호, 제7호) 병과하여 받은 후 제1호는 이행하여 입력이 유보된 경우</p>		<p>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고,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조치를 미이행 했을 경우, 조치 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함.</p> <p>- 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 결과 청구가 기각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당시 남은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여부 결정함.</p> <p>2) 위 '다'항 '1)'에 따라 조치사항 입력이 유보된 가해학생이 동일학교급에서 다시 다른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입력이 유보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모두 입력한다.</p> <p>※ 조치 결정일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함.</p> <p>〈예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예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7호의 경우</p> <p>〈예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동일 일자에 동일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p> <p>〈예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사항을 2개 이상(제1호, 제7호) 병과하여 받은 후 제1호는 이행하여 입력이 유보된 경우</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1호·제2호 ·제3호'의 삭제 절차	<p>□ 해설</p> <p>☞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절차(참고자료 8) 참조에 따라 삭제한다.</p> <p>※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p> <p>※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장을 관리하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삭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함.</p> <p>1) 삭제 대상자는 학교생활 중 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조치를 받은 졸업예정자로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대상이 아님</p>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절차(참고자료 8) 참조에 따라 삭제한다.</p> <p>※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p> <p>※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장을 관리하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삭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함.</p> <p>1) 삭제 대상자는 학교생활 중 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조치를 받은 졸업예정자로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p>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 및 삭제(해설)</p> <p>☞ 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절차(참고자료 8) 참조에 따라 삭제한다.</p> <p>※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p> <p>※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장을 관리하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 삭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함.</p> <p>1) 삭제 대상자는 학교생활 중 제1호·제2호·제3호 조치를 받은 졸업예정자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p>
	영재교육기 관에서 수료한 영재 교육 관련 내용 입력 범위	<p>□ 기재요령</p> <p>☞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국제중 입학전형 개선(안)』 발표(2014.01.08.)에 따라 2014학년도부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에 의거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하지 않고 관련 교과 교과학 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국제중 입학전형 개선(안)』 발표(2014.01.08.)에 따라 2014학년도부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하지 않고 관련 교과 교과학 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p>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p> <p>☞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국제중 입학전형 개선(안)』 발표(2014.01.08.)에 따라 2014학년도부터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하지 않고 관련 교과 교과학 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근거 법령: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p>
	유의 사항			<p>■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p> <p>☞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p>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학생의 특기사항은 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재 가능함.		
기타 사항	'전공·과정' 란 입력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 신설(훈령) ☞ '전공·과정'란에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의 학기별 전공 과정 및 과목, 산업체 실습과정 또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또한,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생이 타학과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부전공의 과목명을 입력한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추가 및 수정(훈령) ☞ '전공·과정'란에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의 학기별 전공 과정 및 과목, 산업체 실습과정 또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또한,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생이 타학과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부전공의 과정명을 입력한다.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훈령) ☞ 전공·과정'란에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기별 전공 과정 및 과목, 산업체 실습과정 또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또한,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생이 타학과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부전공의 과정명을 입력한다.
		■ 문구(항목) 추가(해설) ☞ 가.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기별 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등을 명확히 구별하고,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 선택, 직업과정 위탁교육,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단,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학점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입력한다. 입력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도록 한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추가(해설) ☞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기별 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등을 명확히 구별하고,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 선택, 직업과정 위탁교육,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단,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학점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입력한다. 입력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도록 한다.	■ 문구(항목) 추가 및 수정(해설)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기별 세부전공(전공과정명)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등을 명확히 구별하고,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 선택, 직업과정 위탁교육,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단,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학점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입력한다. 입력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도록 한다.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가.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 문구(항목) 수정 및 삭제(기재요령) ☞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과정(구. 종합고 직업계열)의 학기별 세부전공(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일반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을 입력한다.</p> <p>- 세부전공(전공코스) 입력 서식 ※ (세부전공) 과정명</p>		<p>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학과*의 학기별 세부전공(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일반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을 입력한다.</p> <p>*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p> <p>- 세부전공(전공코스) 입력 서식 ※ (세부전공) 과정명</p>	<p>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학과*의 학기별 세부전공(전공과정명)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일반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을 입력한다.</p> <p>*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p>
	<p>■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p> <p>☞ 마.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학점 이상 이수하면, 이수를 완료한 학년·학기의 '전공·과정'란에 '(부전공)과정명'으로 입력한다.</p>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학점 이상 이수하면, 이수를 완료한 학년·학기의 '전공·과정'란에 '(부전공)과정명'으로 입력한다.</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학점 이상 이수하면, 이수를 완료한 학년·학기의 '전공·과정'란에 '(부전공) 타학과 전공과정명'으로 입력한다.</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교육정보시스템의 [교육과정]-[담임편성관리]-[담임교사편성]에서 '학생부 반영'과 '이력추가'를 선택한 후 등록함.</p> <p>○ 학급담임교사가 A교사 → B교사 → C교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A교사, B교사, C교사 모두 입력함.</p> <p>○ 학급담임교사가 A교사 → B교사 → A교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A교사, B교사, A교사 모두 입력함.</p>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학급 담임교사 이력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사진 파일 용량	<input type="checkbox"/> 기재요령 ☞ 교육정보시스템 입력용 사진의 파일용량은 50KB(JPEG 형식 기준, 해상도 300dpi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크게 설정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교육정보시스템 입력용 사진의 파일용량은 200KB(JPEG 형식 기준, 해상도 300dpi 정도)까지 지원하며, 사진일괄올리기 메뉴의 사진일괄변환 버튼을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자료의 보존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보존·관리 방안	<input type="checkbox"/> 훈령 ☞ ③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해설 ☞ 다.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는 해당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존·관리하고 이후 관할 교육청 자료관으로 이관하여 '기록물 전문 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구(항목) 수정(훈령) ☞ ③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구(항목) 수정(해설) ☞ 다.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는 해당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존·관리하고 이후 관할 교육청 자료관으로 이관하여 '기록물 전문 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input type="checkbox"/> 훈령 ☞ ④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훈령) ☞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 생활기록부Ⅱ)의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u>행동특</u>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제8호)의 삭제 시기	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 (제1호, 2호, 제3호) 의 삭제 시기	□ 훈령 ☞ ⑥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훈령) ☞ ⑥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자료의 정정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 종료 시기	□ 훈령 ☞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 문구(항목) 추가(훈령) ☞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심의내용	<input type="checkbox"/> 훈령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구(항목) 추가(훈령)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졸업생의 정정 절차	<input type="checkbox"/> 해설 다.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중전의 모든 학교생활기록부 포함)의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관리·보관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장이 별표 10의1 서식에 의거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구(항목) 추가(해설) 다.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중전의 모든 학교생활기록부 포함)의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관리·보관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장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10의 1조 서식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input type="checkbox"/> 해설(별표 1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구(항목) 수정(별표10 해설)	전년도와 동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구(항목) 수정(별표10 해설)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수상경력 정정 절차	<p>☞ 나. 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성적 산출과 수상경력(보조부(교과목 성적일람표와 수상대장)의 정정결재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p>	<p>☞ 나. 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교과목성적 재산출과 보조부(교과목 성적일람표)의 정정결재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또한 수상대장에 반영된 수상경력의 정정 시 '수상대장 반영여부'를 선택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p>		<p>☞ 나. 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교과목성적 재산출과 보조부(교과목 성적일람표 등)의 정정결재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또한, 수상대장에 반영된 수상경력의 정정 시 '수상대장반영여부'를 선택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p>
	정정 전 출력물 증빙자료	<p>□ 기재요령</p> <p>☞ 마.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는다(결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정 전 내용과 정정 후 내용 확인 가능).</p>	<p>전년도와 동일</p>	<p>■ 문구(항목) 추가 신설(기재요령)</p> <p>☞ 마.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는다(결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정 전 내용과 정정 후 내용 확인 가능). 단, 재입학·편입학·복학 등에 따라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p>	<p>■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p> <p>☞ 마.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는다(결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정 전 내용과 정정 후 내용 확인 가능). 단, 유급·재입학·편입학·복학 등에 따라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p>
	학교생활 기록부 정정대장 결재	<p>□ 기재요령</p> <p>☞ 차.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는 담임(담당), 담당부장, 교감, 교장의 4단 결재를 거치며 대결 또는 전결로 처리하지 않는다.</p> <p>1)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건의 정정을 위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참석 위원 중 학교장이 정한 자를 포함하여 4단 결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4단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 결재 단계를 축소할 수 있다.</p> <p>- 4단 결재가 부득이한 경우: 교감 미배치, 담임과 담당부장이 동일인인 경</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차.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는 담임(담당), 담당부장, 교감, 교장의 4단 결재를 거치며 대결 또는 전결로 처리하지 않는다.</p> <p>1)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건의 정정을 위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참석 위원 중 학교장이 정한 자를 포함하여 4단 결재를 실시한다.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4단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 결재 단계를 축소할 수 있다.</p> <p>- 4단 결재가 부득이한 경우: 교감 미배치, 담임과 담당부장이 동일인인 경</p>	<p>전년도와 동일</p>	<p>전년도와 동일</p>

영역 (항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p>우 등(장기연수, 출장 등의 사유에 따른 장기간 공석은 결재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p> <p>- 4단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 모든 학업 성적관리위원회 참석 위원 인원을 결재 단계에 포함하였음에도 교원 수의 부족으로 4단 결재가 불가한 경우</p>	<p>우 등(장기연수, 출장 등의 사유에 따른 장기간 공석은 결재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p> <p>- 4단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 모든 학업 성적관리위원회 참석 위원 인원을 결재 단계에 포함하였음에도 교원 수의 부족으로 4단 결재가 불가한 경우</p>		
	<p>상급학교 입학전형에 따른 정정대장의 온라인 제공 시 제외 항목</p>	<p>□ 기재요령</p> <p>※ 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전입교와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에 온라인으로 별표 10의 1조의 서식으로 전송된다. 다만, 고등학교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에 온라인 제공 시 인적·학적 사항의 학생 정보, 학교폭력 관련, 질병명의 정정내용은 온라인으로 전송되지 않는다.</p>	<p>전년도와 동일</p>	<p>전년도와 동일</p>	<p>■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p> <p>※ 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전입교와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에 온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10의 1조의 서식으로 전송된다. 다만, 고등학교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에 온라인 제공 시 인적·학적 사항의 학생 정보, 학교폭력 관련, 질병명의 정정내용은 온라인으로 전송되지 않는다.</p>